

이 과제는 2019년 고용노동부의 「고용영향평가사업」에 관한 위탁사업에 의한 것임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식 개선 연구: 고용장려금사업



본 보고서는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의 2019년 고용영향평가 사업으로 수행한 연구결과입니다.

연구주관 · 시행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김재호(한국노동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참여연구자 : 강창희 (중앙대학교 교수)
박상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연구위원)
김수형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원)

목 차

요 약	i
제1장 서 론	1
제1절 평가의 필요성	1
제2절 평가의 목적	2
제2장 고용장려금	4
제1절 고용창출장려금	6
1. 일자리 함께 하기	7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9
3. 고용촉진장려금	10
4. 신중년적합직무(장년고용지원금)	11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12
6. 장년고용안정지원금	13
7. 청년내일채움공제	14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15
1. 고용유지(휴업)	15
2. 고용유지(휴직)	16
3.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17
제3절 고용안정장려금	17
1.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18
2. 정규직전환	19
3. 일가정양립환경개선	20
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21
제4절 기타 고용장려금	22
1. 직장어린이집지원	22

제3장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25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25
제2절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30
1. 분석 표본의 구성 방법	30
2. 통계분석 모형	33
3. 통계 분석 결과	35
제3절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	44
제4장 수혜집단별 고용효과 분석	93
제1절 여성 및 고령층 대상 지원금	95
제2절 청년층 대상 지원금	95
제3절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99
제4절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103
참고문헌	108

표 목 차

〈표 3- 1〉 사업별 분석단위	26
〈표 3- 2〉 고용장려금 사업군 세부사업들의 처치 사업체 수	29
〈표 3- 3〉 2010~2018년 기간 연도별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사업체 수 ..	31
〈표 3- 4〉 2010~2018년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횟수별 사업체 수 ..	31
〈표 3- 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38
〈표 3- 6〉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42
〈표 3- 7〉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II: 대분류 산업별	43
〈표 3- 8〉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45
〈표 3- 9〉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48
〈표 3-10〉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51
〈표 3-11〉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52
〈표 3-1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	55
〈표 3-13〉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56
〈표 3-14〉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58
〈표 3-15〉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59
〈표 3-1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62
〈표 3-1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63
〈표 3-18〉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66
〈표 3-1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67
〈표 3-20〉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70
〈표 3-21〉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	71
〈표 3-22〉 “정규직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73
〈표 3-23〉 “정규직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74
〈표 3-2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	76
〈표 3-25〉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78
〈표 3-26〉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80
〈표 3-27〉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	81
〈표 3-28〉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84
〈표 3-29〉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	85
〈표 3-30〉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87
〈표 3-31〉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88
〈표 3-3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91
〈표 3-3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	92
〈표 4- 1〉 수혜집단별 사업군의 처치 사업체수	94
〈표 4- 2〉 “청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	97
〈표 4- 3〉 “청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98
〈표 4- 4〉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101
〈표 4- 5〉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102
〈표 4- 6〉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전체 산업	105
〈표 4- 7〉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대분류 산업별	106

그림목차

[그림 2-1] 고용안정 지원제도 체계도	6
[그림 3-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처치 사업체와 통제 사업체의 평균 고용규모	36

요약

1. 연구배경 및 목적

- 2018년 현재 고용안정사업에는 4개 사업군으로 분류된 총 1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이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소기의 고용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본 연구는 이근희 외(2016)의 후속 연구로서 2016~2018년에 시행된 고용안정 사업들 중 분석가능한 사업들의 고용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2. 고용장려금 개요

- 고용장려금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업의 신설, 폐지, 개편 등의 이유로 그 변화의 폭도 커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
- 먼저 2011년부터 고용안정 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수급과 사중손실을 차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이후 지속적인 사업관리를 추진함.
- 최근 2017년부터는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지원하며,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유형별로 통합·단순하게 개

편함.

- 그 결과 최근의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크게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 그리고 고용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 3대 영역과 기타 고용장려금으로 구분되고 있음.
 -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
 -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은 교대제와 장시간근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추가고용,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 신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기타 고용장려금은 기타 고용장려금 용자, 고연령자 고용촉진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3.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 평가대상 및 범위

- 본 장에서는 2010~2018년 기간 내에 발생한 고용장려금 사업의 14개 세부사업들을 대상으로 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세부 사업별 분석의 순서는 앞선 제2장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나 세부사업들간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함. 분석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함. 첫째,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둘째, 기타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임.
 - 먼저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추정은 이어지는 세부사업들에 공통으로 적용된 추정방법이기 때문에 추정방법에 대한 자

세히 설명을 기술한 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후,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는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 정규직 전환 사업,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순으로 분석함.

〈사업별 분석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들(고용DB 데이터)	비고	
1. 고용창출 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45), 주근로시간단축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56)	분석 통합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36)	
	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30)	분석 제외
	4. 신중년 적합업무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41)	
	5.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27)	
	6. 청년추가고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69)	
3. 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조치(휴업) (26)	분석 통합
	2.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22)	
	3.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무급휴업, 휴직(31)	
2. 고용안정 장려금	1.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37),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38), 시간선택제 개선(35)	분석 통합
	2.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지원금(51)	
	3.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44)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70),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71),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42), 육아휴직지원금(43)	분석 통합
4. 직장어린이집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금(66)	
5.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16)	분석 통합
	2.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6년)근로시간단축형(14), 임금피크제지원금(근로시간단축)(46)	
6.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67)	

□ 평가방법

○ 고용효과 정량분석 개관

-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특정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처치 집단(treatment group)을 형성함.
- 이들 처치 사업체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제 사업체는 해당 세부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수혜 사업체로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체들임.
- 고용장려금 세부사업의 수혜 사업체 선정방법은 외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칭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수혜 사업체 선정 이전 시점에 처치 사업체와 제반 관측 특성이 유사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들을 이용해 통제 사업체 집단을 구성함.
- 또한 고용장려금 수혜가 종료된 이후(수혜 종료 1년, 2년, 또는 3년 이후) 한 시점 현재 처치집단 사업체들과 통제집단 사업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고용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정함으로써 특정 세부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추정함.
- 고용효과 정량분석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방법(본문 pp.37~39)을 참조.

□ 분석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구성한 사업체별 원자료

- 2010~2018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DB로부터 식별된 총 관측치 수(=사업체*연도)는 12,973,677개임.
- 이들 중 사업체의 대표 산업코드가 부재하거나, 대분류 산업이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및 “U. 국제 및 외국기

- 관”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 이 사업체들을 제외했을 때의 총 관측치 수는 11,783,836개이고, 총 사업체 수는 2,826,217개임.
 - 이들 사업체 중에서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사업군의 14개 세부사업들 중 적어도 1개 이상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사업체의 수는 총 165,943개로서, 전체 사업체의 약 5.9%에 해당함. 이들 사업체가 이하의 실증분석에서 각 세부사업의 처치 사업체 집단을 구성함.
 - 이들 165,943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한 번도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들로서, 우리를 이들 사업체를 이용해 매칭된 통제집단을 구성함.

4. 분석결과

가.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751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4~16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용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7~5.4%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액은 약 6,612억 원임. 그러므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146.3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나.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093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57~61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용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8~1.9%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123.7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87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8.5%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장려금의 총액은 약 1,142억 원임. 그러므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208.0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757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

가 약 29~3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2.5~12.9%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7~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총액은 약 3,820억 원임. 그러므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2017~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331.4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64.3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590~1,65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9~4.0%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려금의 총액은 약 2,464억 원임. 그러므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446.8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0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1%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려금의 총액은 약 1,918억 원임. 그러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262.9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16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3~2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0.7% 정도로만 증가시킴. 한편, 2012~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총액은 약 333억 원임. 그러므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은 2012~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최대 약 64.1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33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99~10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0.3% 정도로만 증가시킴. 한편, 2014~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시간선택제 전환”사업 지원금의 총액은 약 200억 원임. 그러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은 2014~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최대 약 64.5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정규직 전환”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4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00~10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3~3.4% 정도 증가시킨. 한편, 2015~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정규직 전환” 사업 장려금의 총액은 약 253억 원임.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사업은 2015~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274.2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557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63~6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약 0.9% 정도 감소시킨.

□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9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최대 약 8.9% 정도 증가시킨. 한편, 2018년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신중년 적합업무” 장려금의 총액은 약 32억 원임. 그러므로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은 2018년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459.4명 정도 고용을 증

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5.537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09~12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6~5.1% 정도 증가시킴. 한편,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의 총액은 약 572억 원임. 그러므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86.2명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524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1~3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 약 4.9% 정도 감소시킴.

□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718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

가 약 36~4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
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8% 정도 감소시킴.

〈고용장려금 사업군 세부사업들의 처치 사업체 수〉

	1. 일자리 함께 하기	2.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3. 신중년 적합 업무	4. 고용촉진 지 원금	5. 청년추가 고용	6. 시간 선택제 전환	7. 정규직 전환	8. 일가정 양립 환 경 개선	9. 출산 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10. 고용 유지 지원금	11. 직장 어린이집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3. 정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14. 청년내일 채움공제
2010	0	0	0	1	0	0	0	0	2,633	0	0	0	0	0
2011	7	12	0	525	0	0	0	0	2,364	976	109	0	0	0
2012	60	132	0	2,473	0	0	0	0	3,330	1,483	128	347	0	0
2013	69	197	0	6,461	0	0	0	0	3,454	1,301	161	677	0	0
2014	56	1,674	0	15,435	0	2	0	0	3,635	1,225	192	947	0	0
2015	127	4,481	0	24,072	0	251	45	0	4,535	1,652	218	1,683	0	0
2016	185	3,846	0	33,836	0	668	389	90	5,760	1,223	275	2,507	39	2
2017	192	1,324	0	31,657	287	1,285	673	414	6,414	1,306	307	3,145	67	9,707
2018	195	1,007	750	14,387	33,410	1,654	910	842	6,299	1,211	321	3,569	75	38,317
총계	891	12,673	750	128,847	33,697	3,860	2,017	1,346	38,424	10,377	1,711	12,875	181	48,026
A 보조금 총액 (억 원)	572	1,142	32	6,612	3,820	200	253	188	3,395	2,641 [3,143]	2,464 [5,070]	333	50	1,918 [4,516]
B. 추정치	5.537**	1.875**	1.960**	0.751**	3.757**	0.334	3.440**	-0.557	1.093**	-1.718**	64.34**	0.166	-1.524	1.050**
C. 고용규모 증가율 (%)	4.6~ 5.1	8.5	8.9	4.7~5.4	12.5~ 12.9	0~0.3	3.3~3.4	0.9	1.8~1.9	4.8	3.9~4.0	0~0.7	4.9	3.1
D. 고용효과 (10억 원)	86.2	208.0	458.0	146.3	331.4	64.6	274.8	-39.8	123.7	-67.5 [-56.7]	446.8 [217.1]	64.1	-54.7	262.9 [111.7]

주 : 1) A. 보조금 총액(억 원)은 고용보험 DB내 수혜 금액의 합임. []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
산(일반예산+고용보험)임.
2) B. 추정치에서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3) D. 고용효과(10억 원)는 "10억 원당 고용효과=총계*추정치/보조금총액/10"임. 여기서 '추정
치'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효과 추정결과 '패널 A. 단기효과' (4)열 추정치임. []는 고
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산(일반예산+고용보험) 기준 추산 결과임.

제1절 평가의 필요성

- 2018년 현재 고용안정사업에는 4개 사업군으로 분류된 총 17개 사업이 추진 중이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 고용장려금 사업은 크게 (1) 고용창출장려금, (2) 고용유지장려금, (3) 고용안정장려금, (4) 기타 고용장려금으로 구성됨.
 - 이들 4개 사업군 각각에 세부적인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고용장려금 사업에 투입된 예산은 2016년 약 1.7조 원, 2017년 약 2.1조에 달함.
- 이에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고용장려금 사업들이 소기의 고용 성과를 달성하고 있는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됨.
 - 박윤수(2016)는 고용장려금 제도 전반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1) 다양한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사업군별로 재분류하고, (2) 기존 일자리의 유지를 위한 지원보다는 신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3) 취약층에 대한 선별적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함.
 - 이근희 외(2016) 또한 2013~2014년에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고용장려금 사업들 중 4개 사업(시간선택제일자리지원, 장년고용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고용유지지원)에 대한 고용영향평가를 통해 고

용장려금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회적 취약계층(장애인, 고령자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함.

- 아울러 이근희 외(2016)는 현재 알려진 고용장려금의 효과는 주로 단기적 효과에 불과하므로 고용장려금의 장기적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함.

제2절 평가의 목적

- 본 연구는 이근희 외(2016)의 후속 연구로서 2016~2018년에 시행된 고용안정 사업들 중 분석가능한 사업들의 고용 영향을 평가하고자 함.
 - 고용장려금의 4개 사업군 중 사업체에 관한 고용규모 등의 미시 자료가 확보될 수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해당 고용장려금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함.
 - 이근희 외(2016)는 일부 고용장려금 사업의 사업 시행 1년 후의 단기 고용효과 추정치들을 제시함. 그러나 이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용장려금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보여주는 추정치는 부재함.
 - 본 연구는 2015~2018년 기간의 고용장려금 사업들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 시행 1년 후 효과뿐만 아니라 (가능한 경우) 2~3년 후의 고용효과까지를 추정해보고자 함. 따라서 사업에 따라 분석기간의 차이는 있으나 분석의 기간은 2010~2018년에 발생한 고용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본 평가를 통해 고용장려금 사업의 효과성에 관한 보다 폭넓은 이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본 연구는 고용장려금 사업들의 고용영향을 평가한 결과를 토대로 고용장려금 사업의 효과성 제고와 정책적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사업들 중 고용효과성이 불확실하거나 작은 사업들과 효과성이 우수한 사업들을 분류하고 사업의 효과성에 따라 예산 배분의 차등을 두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함.

- 또한 고용영향 평가 과정에서 발견된 경험적인 사항들을 토대로 고용장려금 사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향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고용장려금 사업 전반에 대한 현황 분석
 - 고용장려금 사업의 배경 및 현행 사업들에 대한 현황 분석 등
 - 2016~2018년에 시행된 고용장려금 사업들의 고용창출 효과를 분석함. 특히 본 연구에서는 고용장려금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사업체들의 고용 규모와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들의 고용 규모를 비교하는 처치효과 통계 분석(treatment effects analysis)을 통해 평가 대상 고용장려금 세부 사업의 고용효과성을 추정함.
 -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 효과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모색함. 정부의 고용장려금 사업이 고용의 창출과 유지에 기여하는 고용친화적 지원사업이 되기 위한 정책 방안들을 모색함.

제2장

고용장려금

- 고용안정 사업¹⁾은 현장의 다양한 수요가 반영되어 지원금의 종류도 많을 뿐만 아니라 연도별 사업의 신설, 폐지, 개편 등의 이유로 그 변화의 폭도 커서 이를 일목요연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음. 따라서 본 장에서는 가장 최근의 고용안정 사업을 중심으로 사업의 개요를 살펴봄으로써 실증분석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
- 먼저 2011년부터 고용안정 사업은 복잡하고 다양한 사업을 통·폐합하고 부정수급과 사중손실을 차단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음.
- 이후, 지원요건 강화 등으로 인해 사업주가 제도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등 제도보완이 요구되어, 2013년도에는 고용안정사업의 본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사업주의 제도접근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함.
- 2014년도에는 기존 고용안정사업 집행 시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고용조정지원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개선안을 마련하고, 고용촉진 지원금의 지급단계를 세분화 하는 한편,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의 임금보전지원 및 설비투자 지원제도를 신설하였음.
- 2015년에는 고용창출 확대를 위해 추가로 제도를 개선하거나 상시·지

1) 제2장은 고용안정 사업의 이해를 위해 고용보험백서(연도별), 고용노동백서(연도별) 그리고 고용보험의 고용장려금 안내(<https://www.ei.go.kr/ei/html/ems/>)를 참고하여 정리되었다. 본 장에서 별도의 인용이 없는 한 해당 참고자료를 인용하고 있음을 밝힌다. 한편, 고용안정사업에서 다양한 명칭들은 고용보험백서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속적 업무에 정규직을 사용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필요에 따라 정규 직 전환지원 사업을 신설하였고,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수준 상향 등 제도를 개편함. 또한 임금피크제 도입, 임금체계 개편 등 세대간 상생고용노력과 더불어 청년 정규직을 신규채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세대간 상생고용 지원제도를 신설함.

- 2017년부터는 근로자에게는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업주에게는 보다 쉽고 간편하게 장려금을 지원하며, 예산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장려금을 유형별로 통합·단순하게 개편함.
- 이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으로,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하여 최대한 통일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사업을 설계하였고, 인건비·임금증감액 보전·간접노무비 등 지원수준도 일원화 함. 다만, 구조조정 대비라는 상징성이 있고 지원대상 및 요건이 상이한 ‘고용유지지원금’과 일부 한시사업 등은 기존과 같이 유지함.
-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인 고용촉진지원금,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지역성장산업고용 지원, 전문인력채용 지원은 ‘고용 창출장려금’으로 통합하여 최대한 통일적이고 단순한 형태로 사업 설계하였고, 인건비·임금증감액 보전·간접노무비 등 지원수준도 일원화 함.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인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함. 각 사업별로 각각 달랐던 지원의 내용도 인건비·임금증감액 보전·간접 노무비 등으로 통일하여 일원화 함.
- 그 결과 최근의 고용안정지원 사업은 크게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 그리고 고용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 3대 영역과 기타 고용장려금으로 구분되고 있음.
 - 고용조정 지원(고용유지지원금)은 산업구조의 변화와 기술진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 위험으로부터 근로자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업
 - 고용안정 지원(고용안정장려금)은 재직 근로자가 안정적으로 오래 일

- 할 수 있도록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사업
- 고용창출 지원(고용창출장려금)은 교대제와 장시간근로의 직무체계를 개선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추가고용, 취업 취약계층 고용 등 신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 기타 고용장려금은 기타 고용장려금 용자, 고연령자 고용촉진지원, 세대간 상생고용지원, 그리고 직장어린이집 지원 등

[그림 2-1] 고용안정 지원제도 체계도



제1절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또는 신중년 적합직무에 신중년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

로시간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임

- 2017년에 고용장려금 통합 개편에 따라 신규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사업은 '고용창출장려금'으로 통합하였음. 이에 따라 고용창출장려금은 ①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 ②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③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④ 전문인력 채용지원, ⑤ 고용촉진장려금, ⑥ 장년고용 지원금, ⑦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으로 개편함.²⁾

1. 일자리 함께 하기

- 일자리 함께 하기 사업은 주 근로시간 단축³⁾, 실 근로시간 단축, 교대근로 개편, 정기적인 교육훈련 또는 안식휴가 부여 등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를 새로 도입하거나 확대하고 실업자를 고용함으로써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지원하는 제도임.
- 일자리 함께 하기의 지원은 두 종류로 인건비 지원과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으로 구분됨.

가. 인건비 지원

-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임. 단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 요건은 아래와 같은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시간 단축제, 그리고 일자리 순환제와 같이 일자리 함께 하기 제도 중 하나를 새로 도입하거나

2) 실증분석에서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과 전문인력 채용지원 사업은 다양한 이유로 제외한다. 가장 큰 이유는 제도의 성격이 다르거나 제도 신설이 최근에 이루어졌거나 고용보험 DB에서 사업을 식별할 수 없는 경우이다. 특히 국내 복귀기업 고용지원 사업은 고용보험 DB내에서 지역성장산업 지원금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기업 및 조기단축 기업의 지원을 위해 주 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신설(2018년 7월).

확대 시행하고, 제도 도입 이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증가⁴⁾하여야 함.

- 교대제 도입확대: 근로자를 조별로 나누어 교대로 근로하게 하는 “교대제”를 새로 실시하거나 조를 늘려 실시(4조 이하에 한함)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제) 실 근로시간 단축조치를 시작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보다 단축조치를 시작한 다음 달부터 매 3개월 간 실근로시간 단축제 실시 대상 업무와 그 업무에 대한 관리·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부서 전체 근로자의 주 평균 초과 근로시간(휴일근로시간 포함)이 2시간 이상 단축하거나 (주 근로시간 단축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15513호)에 따라 주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2018년 7월 신설)
 - 일자리 순환제: 당해 사업장에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거나 30일 이상의 안식휴가를 부여하는 “일자리 순환제”를 실시하고, 이로 인하여 생기는 빈 일자리에 실업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 지원수준은 증가근로자수 1명당 월 40~100만 원 지원, 1~3년간 지원을 지원함.

2)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

-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주근로시간 단축제 지원 기업임. 단 (공통)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주 근로시간 단축제) 300인 이상 상호출자제한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은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도입 등을 통해 빈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확대한 기업으로서 근로자수가 증가⁵⁾하여야 한다.
- 지원수준은 임금감소액 일부 또는 전부를 사업주가 보전한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소 10만 원에서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원함. 단, 사업

4) 증가근로자수=(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 근로자수)-(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 근로자수).

5) (제도 도입·시행 후 매 3개월 평균근로자수)-(제도 도입·시행 전 3개월 평균근로자수).

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며 지원인원은 증가근로자 1명 당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 10명까지 지원(버스업종은 20명)함.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은 사업주가 근무체계 개편, 새로운 시간선택제 직무 개발 등을 통하여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이 만들고,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 및 간접노무비를 지원함으로써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우선지원대상기업, 대규모기업)이며,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은 다음과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실업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
 -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
 -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지원은 1년의 범위 내에서 3개월 단위로 인건비와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데,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3명)함.
 - 인건비 지원은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월 60만 원 지원. 단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간접노무비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 경우 신규 근로자수 1명당 월 10만 원 지원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 장려금 지급에서 제외됨
 - 초과근로를 20시간 이상 실시한 달
 - 출퇴근 기록이 월 5일 이상 누락된 달

- 위 사항 중 하나를 2회 위반 할 경우 해당 근로자를 장려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고용촉진장려금

- 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곤란한 사람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취약계층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임.
-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이나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나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및 구직등록한 실업자를 고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해야 함.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자: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운영하는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고령자인재은행이 운영하는 「고령자 취업능력 향상 프로그램」(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여성가족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 운영하는 「허그일자리 지원 프로그램」(법무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정규훈련, 맞춤형훈련, 직업훈련준비프로그램)」(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지원하거나 위탁계약을 체결한 공공 또는 민간훈련기관이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 훈련 프로그램」(고용노동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고용노동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활근로」(보건복지부), 국방전직교육원이 운영하는 「기본교육」과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워크숍」(국방부, 국가보훈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전직스쿨, 재도약프로그램 등)」(고용노동부), 자치단체가 고용노동부 등 국가로부터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위탁받거나 업무협약을 맺어 시행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프로그램,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이직시」(고용노동부)

-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예외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아니하여도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혹은 도서지역 거주자일 경우에는 구직등록을 하고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서 고용하면 지원대상이 됨.

- 지원한도와 수준은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에 대하여 신규 고용한 근로자 수 1인당 월 30~60만 원임.

	회차별 지원액(6개월 단위)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3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180만 원	360만 원

※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

- 지급 주기 및 기간은 고용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간 매 6개월 단위로 지급함.

4. 신중년적합직무(장년고용지원금)

- 신중년 적합직무 사업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하는 경우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신중년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여기서 신중년 적합직무는 경영/사무 관련 전문직 및 사무직, 연구 관련직, 정보통신/방송 관련 기술·기능직(기능직의 보조원은 제외), 의료/보건/사회복지 관련 종사자(단순직 제외) 등과 같이 14개 직무분야 70개 신중년 적합직무를 별도로 제시하고 있음.
- 지원대상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및 중견기업임. 다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은 만 50세 이상 실업자를 신규 고용하여 3개월간 고용유지하고, 4대 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하고, 최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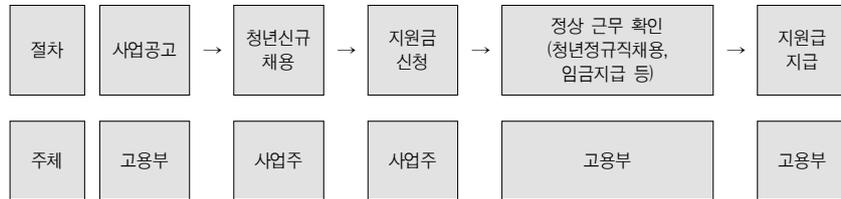
임금 100% 이상의 임금 지급하고 정규직 채용(단, 만 55세 이상 근로자와 2년을 초과하여 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은 지원 가능)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지원한도와 수준은 직전 보험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로 지원함. 또한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하되 신규 고용한 근로자수 1명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 80만 원, 중견기업 월 40만 원 지원함.

유형	3개월 지원액	연간총액
우선지원 대상기업	240만 원	960만 원
중견기업	120만 원	480만 원

5.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 중소기업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추가로 고용한 중소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제도임.
- 지원 대상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기업(성장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임. 단, 사행·유흥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외됨.
- 지원 요건은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과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구분됨.
 - (청년 정규직 신규채용) 기업 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30인 미만은 1명, 30~99인은 2명, 100명 이상은 3명 이상) 이상의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야 함.
 - (근로자수 증가) '기업규모별 청년 최저고용 요건' 이상 청년을 추가 채용하여, 전년 연평균 피보험자수 보다 기업 전체 근로자수(피보험자수)가 증가해야 함.
- 지원기간은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지원한도는 최대 90명까지 지원함.
-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음.



6. 장년고용안정지원금

-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은 고령자와 장년 미취업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원하여 기업의 임금부담을 완화하고, 일할 의욕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직원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금임.
- 이 지원금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과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으로 구분됨.

가.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은 고령자를 일정수준 이상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자의 고용촉진 및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지원요건은 정년 미설정 사업장에서 고용기간이 1년 이상인 60세 이상 고령자를 업종별 기준고용률(1~23%)을 초과하여 고용할 경우 지원함. 다만, 지원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 고령자다수고용장려금 또는 고령자 정년연장지원금을 수급중이거나, 지원금 신청전 3개월부터 신청한 후 6개월까지 55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일자리안정자금 지급 대상자는 제외함.
- 지원은 근로자수의 20%(대기업 10%) 한도내에서 기준고용률 초과 인원 1인당 분기별 27만 원을 지원함.
-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분기 단위로 지원금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나.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은 50세 이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단축으로 감액 임금 지원으로 점진적 은퇴 및 인생 3모작 준비 지원을 위한 제도임.
- 지원대상은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이 감소된 50세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임.
- 지원요건은 18개월 이상 근무한 자로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32시간 이하로 단축하면서 임금 감액해야 함.
- 지원은 근로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전후 임금 차액의 1/2을 최대 2년간 연 1,08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 단축 적용 근로자 1인당 최대 2년간 월 30만 원 간접 노무비를 지원함.
- 지급절차는 사업주가 연(분기, 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하면 고용센터에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함.

7.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에게는 장기근속 및 목돈마련의 기회를, 기업에는 우수인재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임.
- 지원대상은 중소·중견기업 정규직 취업 '청년' 및 '채용기업'임.
 - (청년) 만 15~34세의 청년으로 중소·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
 - (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상기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기업
- 지원방식은 [2년형]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과 [3년형] 3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으로 구분됨.
- [2년형] 2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 원 적립(매월 12.5만 원)
 -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2년 900만 원 지원

-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2년 500만 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400만 원 적립(순지원금 100만 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600만 원 목돈 마련
- [3년형] 3년 간 청년·정부·기업의 3자 적립을 통해 자산형성
 - (청년 본인) 청년 본인은 3년간 600만 원 적립(매월 16.5만 원)
 - (정부 → 청년) 취업지원금 3년 1,800만 원 지원
 - (기업 → 청년) 채용유지지원금 3년 750만 원 지원받아, 그 중 청년 장기근속 기여금 2년간 600만 원 적립(순지원금 150만 원)
 -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3년간 근속시 3,000만 원 목돈 마련

제2절 고용유지지원금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생산량·매출액이 감소하거나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의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휴직과 같은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임금(수당)을 지원하여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는 제도임.
- 2017년도에는 구직급여 기초일액이 상향됨에 따라 1일 지원한도액이 5만 원으로 상향 조정 등 사업주의 고용유지 부담 완화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지원수준 확대를 통해 해당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휴업·휴직 3/4 → 9/10지원, 1일 지원한도 상향 6만 원 → 7만 원)하여,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에 기여함.

1. 고용유지(휴업)

- 고용유지(휴업) 지원 제도는 휴업(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

이라 함은 경기변동, 기타 경영상의 장애 등에 신속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근로자와의 고용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근로의무를 면제하는 고용유지조치임.

- 이 제도는 기업전체가 휴업뿐만 아니라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등을 통해 총 근로시간이 기준기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된 경우에도 지원함.
- 지원요건은 근로시간 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歷) 월에 의한 1개월의 단위기간 동안 당해 사업장의 총근로시간이 기준기간의 총근로시간보다 20/100 이상을 초과하여 감소하는 조치를 행하고, 당해 고용유지 기간에 대해 휴업수당 등 금품이 지불 되었어야 함.
- 지원금액은 사업주가 휴업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수당의 2/3(대규모 기업1/2)로 1일 한도 6.6만 원임.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에는 2/3를 지원함.
- 지급기간은 휴업·휴직의 고용유지조치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1년) 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 둘 이상의 고용유지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함.

2. 고용유지(휴직)

- 휴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에 소속된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한 기간 그 근로자의 직무상 보직이 정지되어 근로자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함.
-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에게 1개월 이상의 유급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지원함. 다만 유급 휴직 중 당해 회사의 퇴직조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휴직수당(유급) 지원금은 사업주가 휴직기간에 대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직수당의 2/3(대규모기업1/2)를 지원함. 다만, 대규모기업이 근로시간 단축률 50% 이상인 경우 2/3를 지원함.
- 지급기간은 휴업·훈련·휴직의 고용유지지원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

연도(1년)중에 180일을 한도로 지원하며 둘 이상의 고용유지 조치를 중복하여 실시한 날에 대해서도 1일로 산정함.

3.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 경기의 변동·산업구조의 변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의 수단으로 무급의 휴업 또는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무급휴업·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실직을 예방하고 생계안정 유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지원대상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법에 따른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에 심사위원회에서 무급휴업·휴직 필요성, 근로자 복귀 가능성, 직업능력 향상 계획 등을 심사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하여 지원함.
- 지원금은 심사위원회가 최대 180일 한도로 근로자 평균임금 50%(1일 6.6만 원)범위 내에서 결정함. 만약 사업주가 근로자 직업능력·향상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 1인당 매월 10만 원을 지원(사업주 지원금)함.
- 사업주는 제출한 계획서 및 승인결과에 따라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여야 하고 사업주가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신청함.

제3절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은 학업, 육아, 간병 등 생애주기별로 고용불안이 가속될 때 근로시간 단축, 근로형태 유연화 등을 도입하여 근로자의 계속고용을 지원하거나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사업주를 지원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제도임.
- 기존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지원하는 고용안정 지원제도는 2017년 고용장려금개편에 따라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일·가정 양립 기반 구축,

시간선택제 전환지원, 정규직 전환지원은 '고용안정장려금'으로 통합하였음. 각 사업별로 각각 달랐던 지원의 내용도 인건비·임금증감액 보전·간접노무비 등으로 통일하여 일원화 함.

-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함.

1.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은 크게 3가지로 1)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2) 간접노무비 지원은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그리고 3) 대체인력지원은 모든 사업주를 대상으로 함.
- 다만,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요건은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과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으로 구분됨.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전환일 이전 최근 3개월 동안 주 소정근로시간이 30시간을 초과하는 6개월 이상 고용한 근로자의 주 소정근로시간 1시간 이상 단축
 - 근로자가 자녀보육·퇴직준비·학업·간병 등 본인의 필요에 의해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
 - 전환일로부터 최소 2주 이상 전환
 - 4대보험에 가입하고, 전환 후 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단,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경우는 35시간 이하)
 - 지문인식, 전자카드 등 전자·기계적 방식으로 출퇴근 관리
 - 연장근로는 월 20시간 이내
-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 고용 인건비 지원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시간선택제 전환에 따른 임금감소 보전금과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을 만족하는 전환근로자에 대하여; 전환근로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부터 대체인력을 고용하고 1개월간 고용 유지. 대체인력 고용 3개월 전부터 고용 후 1년까지(1년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시에는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지급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수준은 전환근로자 근로자 수 1인당으로 다음과 같음.

유형	지원대상	회차별 지원액(1개월 단위)	연간총액
임금감소액 보전	모든기업	최대 40만 원	480만 원
대체인력 인건비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	60만 원	720만 원
	대규모기업	30만 원	360만 원
간접노무비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	20만 원	240만 원

○ 지급 기간 및 주기는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날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로 함. 한편 임금감소액 보전 지원과 간접노무비 지원은 실제 전환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하여 지원함.

2. 정규직전환

- 정규직 전환 고용안정장려금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임. 다만,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됨.
- 지원요건은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함.
 - 6개월 이상 고용되고,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 이내인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 또는 6개월 이상 주로 해당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하여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 전환 이후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 4대보험 가입(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기존 동종·유사 업무 정규직 근로자와 임금 등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 지원수준은 '임금증가액'의 경우 사업주가 추가로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전환 근로자 1명당 임금상승분의 80%를 월 최대 60만 원 지원하고, '간접노무비'의 경우 전환 근로자 1명당 월 30만 원 지원함.
- 지원인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인원은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으로 기간제인 피보험자 수의 120% 한도임. 단, 5인 이상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전단에 따라 계산된 한도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5인까지 가능함. 다만, 파견근로자·사내하도급근로자(기간제)·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 전환은 지원 인원 한도 없음.
- 전환한 날이 속하는 다음달부터 1년의 범위 내에서 1개월 단위 지급(실제 근속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함.

3.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일가정양립환경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장려금은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과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으로 구분됨.

가.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 중견기업임. 다만,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는 제외됨.
- 지원요건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 시행하고, 소속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활용하는 경우에 해당됨.
- 유연근무제 활용근로자 간접노무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제도 도입(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제도 도입내용을 규정할 것),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이 주 35시간 이상 40시간 이하일 것), 연장근로 및 근태관리 등을 해야 함.

시차출퇴근제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면서 출퇴근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선택근무제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주 또는 1일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제도
재택근무제	근로자가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주거지에 업무공간을 마련하여 근무하는 제도
원격근무제	주거지, 출장지 등과 인접한 원격근무용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사무실이 아닌 장소에서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근무하는 제도

- 지원수준 및 한도는 활용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 원 지원으로 사업참여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년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30% 한도로 하되, 70명(시차출퇴근제는 50명)을 초과할 수 없음.
- 지급기간 및 주기는 실제 활용한 기간에 따라 1년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주당 활용 횟수에 따라 주 단위로 계산함.

나.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

-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지원대상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임.
- 지원요건은 재택·원격근무를 도입하거나 확대시행하기 위해 프로그램·시설·장비 등을 설치함.
- 사업장 관할지역의 고용센터에 참여신청 및 승인을 받는데 사업주가 투자한 시스템 구축비의 1/2 이내, 2,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함.

4.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 지원대상은 모든 사업주로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단, 육아휴직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제외)는 제외됨.
- 지원요건은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과 대체인력 지원 요건이 있음.
- 육아휴직 등 부여시 간접노무비 지원 요건
 - 근로자에게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하 '육아

- 휴직 등)을 부여하고, 해당 근로자 업무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고용
- 대체인력 지원 요건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을 30일 이상 부여
 -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휴가 또는 육아휴직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부터 신규로 대체인력을 채용하여 30일 이상 고용
 - 동 휴가·휴직 등이 끝난 후 당해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
 - 신규로 대체인력을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년까지(해당 대체인력의 고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고용관계 종료시까지)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지급 제한(기 지급된 장려금 환수)
 - 지원수준은 대체인력 인건비와 간접노무비 지원에 따라 다름.
 - 대체인력 인건비는 대체인력 1인당 인수인계기간(최대 2개월)은 월 12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 채용기간은 월 60만 원(대규모기업 월 30만 원) 지원하는데 사업주가 지급한 임금의 80% 한도로 지원함.
 - 간접노무비 지원은 해당근로자 1인당 월 10~40만 원 지원함.
 - 지급기간 및 주기는 대체인력 인건비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금은 육아휴직 등의 종료 후 30일이 지난 날과 대체인력 고용 후 6개월이 지난 날 중 늦은 날부터 신청함. 간접노무비 지원은 첫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등을 시작한 날부터 1개월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그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함.

제4절 기타 고용장려금

1. 직장어린이집지원

-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위한 사업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인하고 보육 서

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및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지원함.

-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음.
 -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의 사업주 및 사업주 단체의 대표사업주
 - 영유아보육법 제13조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직장어린이집
 -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따른 보육교직원 자격을 가진 원장과 보육교사를 고용
 -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소속의 피보험자의 자녀수가 전체 보육 영유아 수의 3분의 1 이상이거나, 4분의 1 이상이면서 피보험자(다른 사업장 소속 피보험자를 포함)의 자녀의 수가 2분의 1 이상
- 지원수준은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와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임.
 - 직장보육교사 등 인건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에 월 중 유급고용일수가 20일 이상인 보육교사, 원장, 취사부 수를 곱한 금액에서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 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보육영유아 수(해당 월 말일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되, 전체 보육영유아 중 고용보험 피보험자의 자녀가 아닌자의 비율만큼을 빼고 산정
-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음.

지원내역	지원한도					
	월평균 근무 시간	대규모 기업		우선지원대상기업		
직장어린이집 인건비 지원 (원장, 보육교사, 취사부)	주 40시간 이상	60만 원		120만 원		
	주 30시간 이상	55만 원		105만 원		
	주 20시간 이상	40만 원		75만 원		
	주 15시간 이상	30만 원		45만 원		
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현원별기준	40명 미만	40~59명	60~79명	80~99명	100명 이상
	지원금(월)	200만 원	280만 원	360만 원	440만 원	520만 원
	※ 공동직장어린이집인 경우, 우선지원 대상기업수 및 자녀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 지원은 1개월 분에 대해 매달 신청 원칙이며, 신청기한은 매월 다음달 마지막 날에 신청하고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에 제출하면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함.

고용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분석

제1절 분석방법 및 자료

□ 평가대상 및 범위

- 본 장에서는 2010~2018년 기간내에 발생한 고용장려금 사업의 14개 세부사업들을 대상으로 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미친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함.
- 세부 사업별 분석의 순서는 앞선 2장을 바탕으로 사업의 규모나 세부사업들간의 유사성 등을 기준으로 함. 분석은 크게 두 부문으로 구분함. 첫째,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큰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둘째, 기타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임.
 - 먼저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고용효과 추정은 이어지는 세부사업들에 공통으로 적용된 추정방법이기 때문에 추정방법에 대한 자세히 설명을 기술한 후 결과를 제시하고자 함.
 - 이후,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는 출산육아 기고용안정지원 사업,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 정규직 전환 사업,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순으로 분석함.

〈표 3-1〉 사업별 분석단위

	사업명	세부사업들(고용DB 데이터)	비고
1. 고용창출 장려금	1. 일자리 함께하기	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45), 주근로시간단축일자리함께하기지원금(56)	분석 통합
	2.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시간선택제 신규고용(36)	
	3. 국내복귀기업 고용지원	국내복귀기업(30)	분석 제외
	4. 신중년 적합업무	신중년적합직무장려금(41)	
	5. 고용촉진 장려금	고용촉진지원금(취업희망풀)(27)	
	6. 청년추가고용	청년추가고용장려금(69)	
3. 고용유지 지원금	1. 고용유지(휴업)	고용유지조치(휴업) (26)	분석 통합
	1. 고용유지(휴직)	고용유지조치(유급휴직) (22)	
	1. 고용유지(무급휴업휴직)	무급휴업.휴직(31)	
2. 고용안정 장려금	1. 시간선택제 전환	시간선택제 전환(37), 시간선택제 전환(대체인력)(38), 시간선택제 개선(35)	분석 통합
	2. 정규직 전환	정규직전환지원금(51)	
	3.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일가정양립환경개선지원금(44)	
	4.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임신/출산여성 고용안정지원금)(70), 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71), 육아휴직대체인력지원금(42), 육아휴직지원금(43)	분석 통합
4. 직장어린이집 지원	1. 직장어린이집 지원	직장어린이집지원금(66)	
5. 장년고용 안정지원금	1. 60세 이상 고령자고용 지원금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16)	
	2. 장년 근로시간단축지원금	16년)근로시간단축형(14), 임금피크제지원금(근로시간단축)(46)	분석 통합
6. 청년내일채움공제	1.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내일채움공제지원금(67)	

○ 선행 연구들의 경우와 유사하게, 우리는 고용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수혜 시점 및 그 이후 시점들의 고용규모를 미수혜 사업체들과 비교하는 이중차분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고용장려금 각 세부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함.

- 고용장려금 사업이 장려금 수혜가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는 장려금 수혜 사업체의 장려금 수혜 종료 1년~3년 이후의 고용성과를 미수혜 사업체들과 비교함으로써 고용장려금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추정함.

□ 평가방법

○ 고용효과 정량분석 개관

-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특정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해당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받은 사업체들이 처치집단(treatment group)을 형성함.

- 이들 처치 사업체에 대응하는 가장 이상적인 통제 사업체는 해당 세부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외생적인 요인에 의해 수혜 사업체로서 선정되지 못한 사업체들임.

- 고용장려금 세부사업의 수혜 사업체 선정방법은 외생적이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는 매칭의 아이디어를 활용해 수혜 사업체 선정 이전 시점에 처치 사업체와 제반 관측 특성이 유사하지만 고용장려금을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들을 이용해 통제 사업체 집단을 구성함.

- 또한 고용장려금 수혜가 종료된 이후(수혜 종료 1년, 2년, 또는 3년 이후) 한 시점 현재 처치집단 사업체들과 통제집단 사업체들 사이에 어느 정도 고용규모의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추정함으로써 특정 세부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추정함.

□ 분석자료

○ 고용보험 DB를 이용해 구성한 사업체별 원자료

- 본 연구는 고용보험 DB로부터 구성한 사업체별 원자료를 이용해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를 보유한 사업체들을 식별함.

- 고용보험 DB에서 활용 가능한 사업체 관련 정보들은 사업체등록번호, 사업장수, 지역(시도), 산업, (고용보험 가입) 총 종업원 수(=내국인+외국인), 총 내국인 종업원 수 등임.
- 본 연구는 사업체의 총 (고용보험 가입) 내국인 종업원 수를 사업체 고용규모의 지표로 사용함.

○ 통계분석을 위한 데이터 구축

- 2010~2018년 기간에 대해 고용보험 DB로부터 식별된 총 관측치 수 (=사업체*연도)는 12,973,677개임.
- 이들 중 사업체의 대표 산업코드가 부재하거나, 대분류 산업이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및 “U. 국제 및 외국기관”인 경우는 분석에서 제외함.
- 이 사업체들을 제외했을 때의 총 관측치 수는 11,783,836개이고, 총 사업체 수는 2,826,217개임.
- 이들 사업체 중에서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 사업군의 14개 세부사업들 중 적어도 1개 이상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수혜 받은 사업체의 수는 총 165,943개로서, 전체 사업체의 약 5.9%에 해당함. 이들 사업체가 이하의 실증분석에서 각 세부사업의 처치 사업체 집단을 구성함.
- 이들 165,943개 사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사업체들은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장려금을 한 번도 수혜 받지 않은 사업체들로서, 우리를 이들 사업체를 이용해 매칭된 통제집단을 구성함.
- 아래 <표 3-2>는 14개 각 세부사업별 및 연도별로 2010~2018년 기간 동안 해당 사업의 고용보조금을 수혜 받은 사업체들의 수를 제시함.

〈표 3-2〉 고용장려금 사업군 세부사업들의 처치 사업체 수

	1. 일자리 함께 하기	2. 시간 선택제 신규 고용	3. 신중년 적합 업무	4. 고용 촉진지 원금	5. 청년 추가 고용	6. 시간 선택제 전환	7. 정규직 전환	8. 일가정 양립 환경 개선	9. 출산 육아기 고용 안정 지원	10. 고용 유지 지원금	11. 직장 어린이 집	12.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	13. 장년 근로 시간 단축 지원금	14. 청년내 일채움 공제
2010	0	0	0	1	0	0	0	0	2,633	0	0	0	0	0
2011	7	12	0	525	0	0	0	0	2,364	976	109	0	0	0
2012	60	132	0	2,473	0	0	0	0	3,330	1,483	128	347	0	0
2013	69	197	0	6,461	0	0	0	0	3,454	1,301	161	677	0	0
2014	56	1,674	0	15,435	0	2	0	0	3,635	1,225	192	947	0	0
2015	127	4,481	0	24,072	0	251	45	0	4,535	1,652	218	1,683	0	0
2016	185	3,846	0	33,836	0	668	389	90	5,760	1,223	275	2,507	39	2
2017	192	1,324	0	31,657	287	1,285	673	414	6,414	1,306	307	3,145	67	9,707
2018	195	1,007	750	14,387	33,410	1,654	910	842	6,299	1,211	321	3,569	75	38,317
총계	891	12,673	750	128,847	33,697	3,860	2,017	1,346	38,424	10,377	1,711	12,875	181	48,026
A. 보조금 총액 (억 원)	572	1,142	32	6,612	3,820	200	253	188	3,395	2,641 [3,143]	2,464 [5,070]	333	50	1,918 [4,516]
B. 추정치	5.537**	1.875**	1.960**	0.751**	3.757**	0.334	3.440**	-0.557	1.093**	-1.718**	64.34**	0.166	-1.524	1.050**
C. 고용 규모 증가율 (%)	4.6~5.1	8.5	8.9	4.7~5.4	12.5~12.9	0~0.3	3.3~3.4	0.9	1.8~1.9	4.8	3.9~4.0	0~0.7	4.9	3.1
D. 고용 효과 (10억 원)	86.2	208.0	458.0	146.3	331.4	64.6	274.8	-39.8	123.7	-67.5 [-56.7]	446.8 [217.1]	64.1	-54.7	262.9 [111.7]

주 : 1) A. 보조금 총액(억 원)은 고용보험 DB내 수혜 금액의 합임. []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산(일반예산+고용보험)임.

2) B. 추정치에서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3) D. 고용효과(10억 원)는 “10억 원당 고용효과=총계*추정치/보조금총액/10”임. 여기서 ‘추정치’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효과 추정결과 ‘패널 A. 단기효과’ (4)열 추정치임. []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산(일반예산+고용보험) 기준 추산 결과임.

제2절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방법

- 본 절은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 중 가장 예산 규모가 크고 처치 사업체 수가 많은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사업을 대상으로 고용효과 추정방법을 설명함. 다른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는 본 절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추정함.

1. 분석 표본의 구성 방법

-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한 적이 있는 사업체들을 식별함.
-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1회 이상 수혜받은 사업체의 수는 총 79,561개로서, 고용보험 DB 내의 총 2,826,217개 사업체 중 약 2.8%에 해당함.
- <표 3-3>은 2010~2018년 동안 각 연도별로 수혜 사업체 수를 표시함.
 - 총 79,561개 수혜 사업체 중 41,244개(51.8%) 사업체는 2010~2018년 기간 동안 1회만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 받음.
 - 나머지 38,317개(48.2%)는 같은 기간 동안 2회 이상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 받음.
 - 3회 이상을 수혜 받은 사업체들의 비중은 약 9.8% 정도임.
- <표 3-4>는 79,561개 수혜 사업체들이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은 횟수를 표시함.
- 각 처치 사업체에 대응하는 통제 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
- 총 79,561개의 수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각 처치 사업체에 대응하는 1개의 통제 사업체를 성향점수 매칭법을 이용해 선정함.
 - 각 수혜 사업체에 매칭되는 통제 사업체는 수혜 사업체와 (최초 장려

금 수혜 연도 현재) 동일한 대분류 산업에 속한 미수혜 사업체로서 아래의 성향점수 추정치가 수혜 사업체와 가장 가까운 사업체를 선택함.

〈표 3-3〉 2010~2018년 기간 연도별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사업체 수

(단위: 개, %)

	수혜 사업체수	비중(%)
2010	1	0.0
2011	525	0.4
2012	2,473	1.9
2013	6,461	5.0
2014	15,435	12.0
2015	24,072	18.7
2016	33,836	26.3
2017	31,657	24.6
2018	14,387	11.2
전 체	128,847	100

주: 고용보험 DB로부터 저자들이 계산함.

〈표 3-4〉 2010~2018년 기간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횟수별 사업체 수

(단위: 개, %)

횟수	수혜 사업체수	비중(%)
1	41,244	51.8
2	30,590	38.4
3	5,328	6.7
4	1,774	2.2
5	460	0.6
6	123	0.2
7	31	0.0
8	11	0.0
전 체	79,561	100

주: 고용보험 DB로부터 저자들이 계산함.

○ 성향점수 추정식:

$$d_i = \gamma_0 + \gamma_1 duryr_i + \gamma_2 emp(-1)_i + u_i \quad (\text{식 1})$$

- (식 1)에서 d_i 는 사업체 i 가 수혜 사업체인지의 여부(0/1)를 표시하는

더미변수, $duryr_i$ 는 최초 고용장려금 수혜 연도 현재 사업체 i 의 업력, $emp(-1)_i$ 는 최초 장려금 수혜 1년 전 사업체 i 의 고용규모를 의미함.

- 처치 사업체들을 (최초 장려금 수혜 연도*대분류 산업)의 셀별로 구분해 처치집단을 분류함.
- 총 8개 연도(2011~2018년)에 대해 총 16개 대분류 산업이 있으므로, 총 128개의 (연도*대분류 산업) 셀이 구성됨.

○ 통제집단의 구성:

-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을 포함해 고용보조금 사업군에 속한 14개 세부사업의 고용보조금을 전혀 수혜받지 않은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처치 사업체 집단 구성방식과 동일하게 (연도*대분류 산업) 단위로 통제집단을 구성함.
- 이와 같은 방법에 의해 2010~2018년 기간 동안 “고용촉진장려금” 이외의 다른 고용장려금 세부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적인 1회 이상 있는 사업체들은 매칭에 사용할 통제집단에서 자연스럽게 제외시킴.
- 다른 세부사업의 고용장려금으로 인한 고용효과가 존재한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효과를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임.
- 즉 처치 사업체에 매칭될 통제 사업체는 2010~2018년의 전체 기간 동안 분석 대상 고용장려금 14개 세부 사업의 지원금을 한 번도 수혜한 적이 없는 사업체들 중에서 선정함.
- 위와 같이 구성된 통제사업체들과 처치사업체들을 (연도*대분류 산업) 단위의 셀로 구성해 성향점수 추정 표본을 구축함.
- 총 8개 연도(2011~2018년)에 대해 총 16개 대분류 산업이 있으므로, 총 128개의 (연도*대분류 산업) 셀이 구성됨.

○ 매칭 표본의 구성:

- 위의 각 셀 내의 표본에 대해 (식 1)을 추정해 각 셀의 표본에서 개별 처치 사업체와 성향점수가 가장 유사한 사업체를 매칭된 통제 사업체로서 선택함.
- 모든 처치 사업체에 대해 위와 동일한 선정과정을 반복해 각 처치 사업체에 대응하는 매칭 통제 사업체를 하나씩 선정함.

- 매칭되는 통제 사업체를 선정하면서 한 번 선택된 통제 사업체는 표본에서 제외하여 처치 사업체의 숫자와 매칭 통제 사업체의 숫자가 동일하게 되도록 매칭 표본을 구성함.
- 위의 매칭 과정을 통해 통제 사업체를 매칭할 수 있는 “고용촉진장려금”의 처치 사업체는 총 65,024개임(전체 처치 사업체 79,561개의 약 81.7%에 해당함) 그에 따라 매칭된 통제 사업체의 수도 마찬가지로 65,024개임.
- 아래에서는 총 130,048개(=65,024*2) 사업체의 2010~2018년 패널 자료(총 860,497개 관측치)를 이용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함.

2. 통계분석 모형

○ 아래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사업의 단기 및 중장기의 고용효과를 추계하는 모형을 각각 설정함.

□ 통계 분석 모형 1

○ 위에서 설명한 과정을 통해 매칭된 처치 사업체와 통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2010~2018년 기간의 패널자료를 구성해 아래의 고용효과 통계 모형을 추정함.

$$E_{it} = \beta_0 + \beta_1 d_{it} + \beta_2 X_{it} + \alpha_i + \tau_t + \epsilon_{it} \quad (\text{식 2})$$

- (식 2)에서 E_{it} 는 사업체 i 의 연도 t (= 2010, ..., 2018) 시점의 고용규모, d_{it} 는 사업체 i 가 연도 t 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수혜 사업체인지를 식별하는 더미변수(0/1), X_{it} 는 사업체 i 의 연도 t 시점 관측 특성변수, α_i 는 사업체 고정효과, τ_t 는 연도 고정효과를 표시함.
- X_{it} 는 자료의 제약으로 인해 사업체의 연도 t 현재 업력(연수)과 연도 t 에 “고용촉진장려금” 이외의 다른 고용장려금 세부사업으로부터 수혜한 보조금액 정보만을 사용함.

- 사업체의 업력은 사업체의 고유한 특성이므로, 다른 사업의 지원금액은 그것이 누락될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가 과장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명변수로서 통제함.
- 아래의 추정결과표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통제한 모형의 β_1 추정치는 이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모형에 비해 0에 가까워짐. 즉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설명변수로서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사업 지원금의 고용효과가 과장될 수 있음. 그러므로 이하에서는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통제한 모형의 추정치들을 중심으로 해석함.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β_1 의 추정치에 의해 측정됨. (식 2)에서 측정한 고용효과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는 당해 연도의 고용효과만을 보여주므로 해당 사업의 단기 고용효과로서 해석할 수 있음.
- 이론적으로 사중효과(deadweight effects)나 대체효과(replacement effects)로 인해 ‘ $\beta_1 \leq 0$ ’이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들의 효과가 그리 크지 않다면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는 당해 연도에 처치 사업체의 고용은 대체로 증가할 것으로 추측됨. 즉, ‘ $\beta_1 > 0$ ’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음.
- 그런데 이론적 그리고 정책적 관점에서 고용장려금 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지에 관한 의문이 존재함. 즉 고용장려금 사업이 그 지원금이 지급되는 당해 연도뿐만 아니라 지원금 수혜가 종료된 이후 시점에도 여전히 해당 사업체의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즉 중장기적인 고용효과가 존재하는지에 관해 검토할 필요가 있음.

□ 통계 분석 모형 2

- 본 연구는 아래의 (식 3)을 이용해 고용장려금이 수혜 사업체의 수혜 연도 및 수혜 종료 1년 후, 2년 후, 3년 후 시점의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함. 이를 통해 고용장려금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추정함.

$$E_{it} = \beta_0 + (\beta_1^0 d0_{it} + \beta_1^1 d1_{it} + \beta_1^2 d2_{it} + \beta_1^3 d3_{it}) + \beta_2 X_{it} + \alpha_i + \tau_t + \epsilon_{it} \quad (\text{식 3})$$

- (식 3)에서 $d0_{it}$ 는 사업체 i 가 연도 t 에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고 있는지(즉 장려금 수혜 당해 여부)를 표시하는 더미변수이고, $d1_{it}$ 는 사업체 i 의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종료 1년 후 시점을 표시하는 더미변수임.
- 마찬가지로, $d2_{it}$ 는 수혜 종료 2년 후 시점, 그리고 $d3_{it}$ 는 수혜 종료 3년 후 시점을 각각 표시하는 더미변수임.
- $d1_{it} = 1$, $d2_{it} = 1$ 또는 $d3_{it} = 1$ 에 해당하는 연도들은 “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가 종료된 이후 시점들이므로 이들 연도에 사업체 i 는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고 있지는 않음.
- “고용촉진장려금”을 수혜받은 적이 없는 통제 사업체는 $d0_{it}$, $d1_{it}$, $d2_{it}$, $d3_{it}$ 모두에 대해 0을 취함.
- 본 연구는 $\beta_1^0, \beta_1^1, \beta_1^2, \beta_1^3$ 의 추정치들을 계산함으로써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를 추정함.

□ 통계 분석 모형의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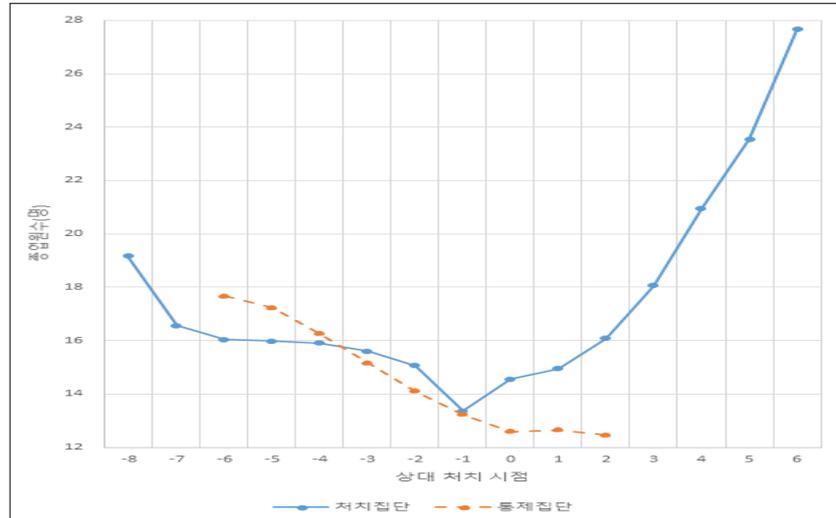
- 이상에서 설명한 매칭 표본의 구성 방법 및 통계 분석 모형 1과 2는 “고용촉진장려금” 이외에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다른 13개 세부사업의 고용효과를 추정하는 분석에서도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됨.

3. 통계 분석 결과

가. 그림을 통한 사전 분석

- 아래 [그림 3-1]은 시점에 따라 처치집단과 (매칭) 통제집단의 평균 고용규모가 변동하는 양상을 보여줌.

[그림 3-1] “고용촉진장려금” 사업 : 처치 사업체와 통제 사업체의 평균 고용규모



- [그림 3-1]의 수평축에 표시된 상대 처치 시점은 처치 사업체의 최초 지원금 수혜 연도를 0으로 표준화했을 때의 상대 연도를 표시함.
 - 즉 상대 처치 시점 -2과 -1은 각각 처치 사업체의 최초 지원금 수혜 연도 2년 전 및 1년 전을 의미함.
 - 마찬가지로, 상대 처치 시점 1과 2는 각각 처치 사업체의 최초 지원금 수혜 연도 1년 후 및 2년 후를 의미함.
- 통제 사업체들의 ‘상대 처치 시점=0’은 2016년(〈표 3-1〉에서 “고용촉진장려금”의 수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은 연도)을 의미함.
-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상대 시점 -5에서 -1까지 처치 사업체들의 평균 고용규모는 (매칭된) 통제 사업체들의 평균 고용규모와 대체로 평행하게 변동함.
 - 이는 이중차분법의 핵심 가정인 “공통 추세의 가정”을 매칭 표본이 적절히 만족할 가능성을 시사함.
- 처치 사업체의 평균 고용규모는 상대시점 -1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나, 상대시점 0부터는 평균 고용규모가 증가하기 시작함. 이는 “고용촉진장려금”사업의 지원금이 처치 사업체들의 고용규모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암시함.

- 장려금이 미치는 고용효과의 구체적인 크기는 아래의 통계분석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나. 통계분석 결과

□ 산업을 구분하지 않고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표 3-5>의 패널 A는 (식 2)의 추정결과를, 패널 B는 (식 3)의 추정결과를 제시함.

- (1)열은 (식 2)에서 '사업체의 업력'과 '다른 사업의 지원금'을 통제하지 않은 경우, (2)열은 이들 변수를 통제한 경우의 추정결과임.
- (1)열과 (2)열의 추정식을 통해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효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공통 추세의 가정", 즉 '처치 사업체들과 통제 사업체들의 고용규모 변동 양상이 장려금의 수혜 이전 시기에 대체로 유사하다'는 가정이 필요함.
- 산업에 따라 연도별 고용규모의 변동 추세가 상이할 수 있음. (3)열은 대분류 산업별로 상이한 선형 추세선을 (식 2)와 (식 3)에 추가해 산업별 고용규모 추세선을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1)~(3)열의 추정식에서는 처치 사업체들과 통제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고용규모의 변동 추세가 동일하다고 가정함(공통 추세의 가정).
- (식 2) 및 (식 3)과 같은 이중차분 모형에서 "공통 추세의 가정"은 진정한 처치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핵심적인 가정임. 이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추정치는 처치(즉 고용장려금 수혜)의 진정한 고용효과를 보여주지 못함.
- (4)열은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이전 연도들을 대상으로 고용규모를 종속변수, 연도를 설명변수로 설정하는 선형 회귀모형을 추정하고 이로부터 도출된 각 연도별 고용규모 예측치를 (식 2)와 (식 3)의 설명변수로 추가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이때 처치 사업체의 처치 이후 고용규모 예측치는 처치 이전 연도들을 이용해 추정한 모형으로부터 외삽하여 구성함. 이 예측치들은 처

〈표 3-5〉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817** [0.085]	1.566** [0.084]	1.592** [0.084]	0.751** [0.047]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066** [0.064]
업력(연수)		0.122 [0.119]	0.229* [0.119]	0.129* [0.066]	0.132** [0.06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437** [0.054]	6.416** [0.054]	1.707** [0.030]	1.705** [0.030]
처치 전 추세선				1.011** [0.001]	1.011**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2.413** [0.093]	1.976** [0.092]	2.002** [0.092]	0.802** [0.05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060** [0.066]
장려금 종료 1년 후	1.799** [0.123]	1.225** [0.122]	1.241** [0.122]	0.344** [0.068]	0.219** [0.066]
장려금 종료 2년 후	1.194** [0.157]	0.697** [0.155]	0.676** [0.155]	-0.128 [0.086]	-0.268** [0.084]
장려금 종료 3년 후	0.820** [0.208]	0.355* [0.207]	0.296 [0.206]	-0.465** [0.115]	-0.610** [0.113]
업력(연수)		0.091 [0.119]	0.197* [0.119]	0.128* [0.066]	0.137** [0.06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414** [0.054]	6.393** [0.054]	1.703** [0.030]	1.705** [0.030]
처치 전 추세선				1.011** [0.001]	1.011** [0.001]
상수항	12.010** [0.093]	11.847** [0.287]	-158.085 [237.500]	-1.532** [0.161]	-1.552** [0.16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30,048	130,048	130,048	130,048	130,048
관측치 총수	860,497	860,497	860,497	860,497	860,49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치 사업체에 만약 처치가 적용되지 않았을 가상의 경우 관측될 것으로 예측하는 고용규모임.

-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처치효과 크기는 처치 이후 시점들에 정의되는 (실측된 고용규모 - 고용규모 예측치)라는 차분 값에 의해 추정됨.
- 사업체별 선형 추세선을 구성하는 회귀모형을 추정할 때 통제 사업체들의 경우에는 2010~2018년 기간의 모든 연도의 관측치를 이용해 연도별 고용규모 예측치를 구성함.
- 사업체별로 선형 (예측) 추세선을 구성할 때 만약 연도별 고용규모 예측치가 음수로 나타나는 경우에 우리는 해당 예측치를 0으로 대체함.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표 3-5>의 (1)~(3)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 추정치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57~1.59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에는 패널 A에 제시된 수치보다 더 큼.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1.98~2.00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종료 2년 차까지도 유의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혜 종료 1년 후의 효과는 1.23~1.24명, 2년 후의 효과는 0.68~0.70명 정도임.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5>의 (4)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751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그림 3-1]에서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

모가 약 14~16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용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7~5.4%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28,847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0.751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0~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96,764.1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의 A행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고용촉진장려금”의 총액(고용보험 DB 기준)은 약 6,612억 원이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 그러므로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146.3명(=96,764.1/661.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한편, 고용보험 DB
- <표 3-2>의 C행에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10억 원당 고용효과 추정치가 제시되어 있음. 아래에서 평가할 다른 사업들의 경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 10억 원당 고용효과 추정치가 <표 3-2> C행의 해당 사업 열에 제시되어 있음.
- (5)열은 (식 2)와 (식 3)의 처치변수(d)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여부가 아니라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5)열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07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5>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에는 패널 A에 제시된 수치보다 약간 더 큼.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802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종료 1년 이후까지 유의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수혜 종료 1년 후의 고용효과는 0.34명 정도임.

- 그러나 수혜 종료 2년 이후에는 양의 고용효과가 사라짐.
- 즉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성을 보여줌.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표 3-6>은 대표적인 대분류 산업별로 (식 2)와 (식 3)을 따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함.

- (1)열은 제조업, (2)열은 건설업, (3)열은 도소매업, (4)열은 음식숙박업, (5)열은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에 대한 추정결과임.
- <표 3-5>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실제 자료에서는 처치 사업체와 통제 사업체 사이에 “공동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이를 감안해 우리는 <표 3-5>의 (4)열에서와 같이 개별 사업체별로 처치 전 추세 예측치를 통제한 모형의 추정치를 대분류 산업별로 제시함.
- <표 3-5>의 경우와 유사하게, 대분류 산업별 추정결과도 “공동 추세의 가정”이 성립한다고 전제하는 모형의 추정치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대체로 크게 나타남.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6>의 패널 A에 의하면, 고용장려금의 단기효과는 제조업(1.172)과 건설업(0.699)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도소매업(0.445), 음식숙박업(0.418)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0.393)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보다는 작게 추정됨.
- <표 3-6>의 패널 B에 의하면, 건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고용촉진장려금”의 고용효과가 장려금 수혜 당해로만 국한됨.
- 반면, 제조업, 도소매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장려금 수혜 종료 1년 차까지 양의 고용효과가 지속됨.
- <표 3-5>에서도 확인한 바와 같이, 대분류 산업별로 분석 대상을 세분한 경우에도 “고용촉진장려금”의 중장기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에 가장 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서히 사라지는 경향성을 보여줌.

- 그러나 양의 고용효과의 지속기간은 산업에 따라 약간씩 상이함.

〈표 3-6〉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설명변수	제조업 (1)	건설업 (2)	도소매업 (3)	음식숙박업 (4)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172** [0.104]	0.699** [0.073]	0.445** [0.059]	0.418** [0.136]	0.393** [0.044]
업력(연수)	0.375** [0.188]	-0.134 [0.126]	0.035 [0.079]	0.158 [0.148]	0.105 [0.06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57** [0.043]	0.569** [0.203]	0.587** [0.086]	5.222** [0.219]	0.545** [0.058]
처치 전 추세선	1.021** [0.002]	1.029** [0.004]	1.001** [0.001]	0.991** [0.006]	1.011** [0.002]
상수항	-3.315** [0.710]	-0.323 [0.463]	-0.675** [0.119]	-1.224** [0.301]	-0.717** [0.17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1.169** [0.113]	0.746** [0.079]	0.498** [0.065]	0.367** [0.153]	0.448** [0.048]
장려금 종료 1년 후	0.369** [0.147]	0.148 [0.101]	0.156* [0.085]	0.014 [0.203]	0.179** [0.066]
장려금 종료 2년 후	-0.470** [0.182]	-0.100 [0.124]	0.040 [0.109]	-0.426 [0.270]	0.049 [0.086]
장려금 종료 3년 후	-0.807** [0.236]	-0.322** [0.159]	0.147 [0.148]	-0.530 [0.379]	-0.214* [0.116]
업력(연수)	0.379** [0.188]	-0.134 [0.126]	0.030 [0.079]	0.169 [0.148]	0.102 [0.06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56** [0.043]	0.562** [0.203]	0.580** [0.086]	5.232** [0.219]	0.539** [0.058]
처치 전 추세선	1.021** [0.002]	1.029** [0.004]	1.001** [0.001]	0.992** [0.006]	1.010** [0.002]
상수항	-3.334** [0.710]	-0.319 [0.463]	-0.668** [0.119]	-1.220** [0.301]	-0.706** [0.17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31,618	7,394	28,808	7,800	17,378
관측치 총수	227,467	53,417	182,247	37,823	119,33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7〉 “고용촉진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II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액수 (천만 원)	1.894** [0.147]	1.103** [0.129]	0.579** [0.088]	0.486** [0.218]	0.600** [0.063]
업력(연수)	0.381** [0.188]	-0.127 [0.126]	0.037 [0.079]	0.163 [0.148]	0.106 [0.06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58** [0.043]	0.579** [0.203]	0.585** [0.086]	5.225** [0.219]	0.549** [0.058]
처치 전 추세선	1.021** [0.002]	1.029** [0.004]	1.001** [0.001]	0.991** [0.006]	1.011** [0.002]
상수항	-3.338** [0.710]	-0.350 [0.463]	-0.678** [0.119]	-1.217** [0.301]	-0.721** [0.17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액수 (천만 원)	1.837** [0.153]	1.044** [0.135]	0.588** [0.093]	0.364 [0.232]	0.609** [0.066]
장려금 종료 1년 후	0.253* [0.142]	0.025 [0.099]	0.060 [0.082]	-0.087 [0.195]	0.112* [0.064]
장려금 종료 2년 후	-0.606** [0.178]	-0.233* [0.122]	-0.067 [0.107]	-0.535** [0.263]	-0.026 [0.084]
장려금 종료 3년 후	-0.947** [0.233]	-0.460** [0.158]	0.035 [0.146]	-0.641* [0.374]	-0.294** [0.114]
업력(연수)	0.391** [0.188]	-0.121 [0.126]	0.037 [0.079]	0.180 [0.148]	0.107* [0.06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59** [0.043]	0.596** [0.203]	0.583** [0.086]	5.237** [0.219]	0.546** [0.058]
처치 전 추세선	1.021** [0.002]	1.029** [0.004]	1.001** [0.001]	0.992** [0.006]	1.010** [0.002]
상수항	-3.381** [0.710]	-0.375 [0.463]	-0.678** [0.119]	-1.211** [0.301]	-0.724** [0.17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31,618	7,394	28,808	7,800	17,378
관측치 총수	227,467	53,417	182,247	37,823	119,33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금액의 고용효과
 - <표 3-7>은 처치변수(d)로서 “고용촉진장려금” 수혜 여부가 아니라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장려금 수혜” 변수가 “장려금 액수”로 교체된 것을 제외하면 <표 3-7>의 배열은 <표 3-6>와 동일함.
 - 대분류 산업별로 “고용촉진장려금” 1천만 원 의 고용효과가 상이함.
 - <표 3-6>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장려금 수혜액 1천만 원의 효과는 제조업(1.894)과 건설업(1.103)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도소매업(0.579), 음식숙박업(0.486)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0.600)의 경우에는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보다는 작게 추정됨.

제3절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세부사업들의 고용효과

- 본 절은 제2절에서 “고용촉진장려금” 세부사업의 고용효과 추정에 적용한 것과 동일한 통계분석 방법을 “고용장려금” 사업군에 속한 다른 13개 세부사업들에 적용한 경우의 분석결과를 제시함.
- 분석 대상 세부사업들은 다음과 같음.

가.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는 경우 <표 3-8>의 (1)~(3)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 추정치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들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표 3-8〉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722** [0.427]	4.636** [0.427]	4.593** [0.427]	1.093** [0.258]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967** [0.216]
업력(연수)		5.670** [1.037]	5.914** [1.038]	1.197* [0.625]	1.189* [0.62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568** [0.070]	0.563** [0.070]	0.141** [0.042]	0.124** [0.042]
처치 전 추세선				1.007** [0.001]	1.006**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5.314** [0.448]	5.188** [0.448]	5.145** [0.448]	0.792** [0.270]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898** [0.217]
장려금 종료 1년 후	2.031** [0.614]	1.871** [0.615]	1.855** [0.614]	-0.731** [0.370]	-0.594* [0.359]
장려금 종료 2년 후	-0.393 [0.747]	-0.518 [0.747]	-0.522 [0.746]	-1.611** [0.450]	-1.485** [0.440]
장려금 종료 3년 후	-1.439 [0.920]	-1.541* [0.920]	-1.517* [0.919]	-0.508 [0.554]	-0.393 [0.546]
업력(연수)		5.637** [1.037]	5.881** [1.038]	1.224* [0.625]	1.213* [0.62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562** [0.070]	0.557** [0.070]	0.144** [0.042]	0.127** [0.042]
처치 전 추세선				1.007** [0.001]	1.006** [0.001]
상수항	49.113** [0.372]	18.171** [5.706]	9950.130** [2075.894]	-10.015** [3.439]	-9.919** [3.43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38,010	38,010	38,010	38,010	38,010
관측치 총수	300,126	300,126	300,126	300,126	300,12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에는 패널 A에 제시된 수치보다 더 큼.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5.1~5.2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종료 1년 차까지만 유의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
 - 수혜 종료 1년 후의 효과는 1.9명. 종료 2년 이후의 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하거나 음수임.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8>의 (4)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093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57~61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고용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8~1.9%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38,424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1.093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0~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41,997.4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장려금의 총액은 약 3,395억 원임.
 - 그러므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123.7명(=41,997.4/339.5)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5)열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2.97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3-8>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792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진.
 - 수혜 종료 1년과 2년 이후의 고용효과는 각각 -0.731과 -1.611명으로서, 이들 수치 모두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이는 장려금 수혜로 늘어난 고용규모가 향후 2년 이내에 원상태로 복귀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함. 즉, 장기적으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은 고용규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음.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9>의 패널 A에 의하면,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단기 효과는 건설업(3.922)과 제조업(2.153)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 이 사업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함.
 - <표 3-9>의 패널 B에 의하면, 건설업과 제조업에서 관측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로만 국한됨.
 - 건설업과 제조업의 경우 모두 장려금 수혜 종료 1년 이후에는 0과 유의하게 다른 고용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사업 수혜 금액의 고용효과
 - <표 3-9>의 “※ 장려금 총액(천만 원)” 행은 (식 2)와 (식 3)의 처치변수(d)로서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에서 수혜 금액의 추정치만을 뽑아 제시함.
 - <표 3-8>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건설업(15.27~15.47)과 제조업(4.884~4.912)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3-9〉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153** [0.758]	3.922** [0.967]	0.172 [0.349]	-7.293 [5.088]	0.134 [0.297]
업력(연수)	2.662 [2.556]	-0.202 [2.322]	0.15 [0.809]	2.137 [7.079]	0.579 [0.67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001 [0.063]	2.833** [0.923]	1.240** [0.217]	1.484 [2.504]	0.990** [0.163]
처치 전 추세선	1.004** [0.003]	1.012** [0.007]	1.008** [0.003]	1.001** [0.020]	1.019** [0.00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4.912** [0.424]	15.466** [1.712]	2.040** [0.509]	-3.766 [6.687]	-0.206 [0.428]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2.085** [0.793]	3.046** [1.004]	-0.092 [0.366]	0.541 [5.383]	0.099 [0.312]
장려금 종료 1년 후	0.144 [1.087]	-1.21 [1.254]	-0.781 [0.490]	-4.842 [7.927]	-0.561 [0.426]
장려금 종료 2년 후	-1.833 [1.325]	-1.504 [1.444]	-1.396** [0.591]	-2.091 [10.248]	-0.439 [0.513]
장려금 종료 3년 후	-1.585 [1.629]	-0.868 [1.659]	-1.297* [0.731]	0.454 [13.205]	0.247 [0.632]
업력(연수)	2.69 [2.556]	-0.176 [2.323]	0.181 [0.809]	2.039 [7.089]	0.591 [0.67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001 [0.063]	2.911** [0.925]	1.262** [0.217]	1.472 [2.511]	1.001** [0.163]
처치 전 추세선	1.004** [0.003]	1.012** [0.007]	1.008** [0.003]	1.002** [0.020]	1.019** [0.00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4.884** [0.425]	15.268** [1.744]	1.843** [0.517]	-4.639 [6.810]	-0.315 [0.436]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8,662	2,140	6,708	574	5,930
관측치 총수	70,442	17,768	52,659	4,079	46,48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도소매업의 경우에 장려금 수혜 자체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하지만, 장려금 수혜액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2.04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
- 음식숙박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 이 사업 장려금 수혜액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함.

나.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10>의 (1)~(3)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서 도출된 추정치임.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우리는 (4)~(5)열의 추정치들을 중심으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고용효과를 논의함.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87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8.5%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2,673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1.875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1~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23,761.9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장려금의 총액은 약 1,142억 원임.
 - 그러므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208.0명(=23,761.9/114.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10>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5)열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141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3-10>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2.57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 뿐만 아니라 수혜 종료 2년 후까지 지속됨.
- 수혜 종료 1년과 2년 이후의 고용효과는 각각 2.105과 1.632명으로서, 이들 수치 모두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11>의 패널 A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단기효과는 음식숙박업(19.17)에서 매우 크게 나타나고, 제조업(1.348)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건설업, 도소매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함.
- <표 3-11>의 패널 B에 의하면, 음식숙박업과 제조업에서 관측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 뿐만 아니라 수혜 종료 2년 후까지 지속됨.

○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 장려금 수혜액의 고용효과

- <표 3-10>의 “※ 장려금 총액(천만 원)”행은 (식 2)와 (식 3)의 처치변수(d)로서 본 사업 장려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에서 수혜 금액의 추정치만을 뽑아 제시함.
- <표 3-10>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음식숙박업(6.430~7.324)과 제조업(1.238~1.350)에서 상

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표 3-10〉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697** [0.567]	2.041** [0.565]	2.108** [0.563]	1.875** [0.324]	
장려금 총액 (천만 원)					3.141** [0.161]
업력(연수)		1.978** [0.927]	2.521** [0.924]	0.44 [0.531]	0.401 [0.53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707** [0.240]	6.590** [0.240]	0.188 [0.139]	0.031 [0.139]
처치 전 추세선				1.003** [0.003]	1.002** [0.003]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4.485** [0.633]	3.304** [0.631]	3.360** [0.629]	2.575** [0.362]	
장려금 총액 (천만 원)					3.289** [0.164]
장려금 종료 1년 후	4.585** [0.839]	3.286** [0.836]	3.245** [0.833]	2.105** [0.479]	2.199** [0.446]
장려금 종료 2년 후	4.283** [0.942]	2.896** [0.939]	2.820** [0.936]	1.632** [0.538]	1.636** [0.510]
장려금 종료 3년 후	5.863** [1.367]	4.116** [1.362]	4.120** [1.357]	0.44 [0.781]	0.331 [0.761]
업력(연수)		1.824** [0.928]	2.368** [0.925]	0.363 [0.532]	0.337 [0.53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633** [0.241]	6.516** [0.240]	0.152 [0.139]	-0.002 [0.139]
처치 전 추세선				1.003** [0.003]	1.002** [0.003]
상수항	16.767** [0.621]	13.284** [1.925]	3027.826 [1844.093]	-2.483** [1.104]	-2.397** [1.10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3,054	13,054	13,054	13,054	13,054
관측치 총수	90,695	90,695	90,695	90,695	90,69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11〉 “시간선택제 신규고용”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렬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348** [0.321]	0.392 [0.502]	0.352 [0.272]	19.174* [10.622]	-0.458 [0.627]
업력(연수)	0.22 [0.602]	-0.369 [1.089]	0.063 [0.401]	-2.493 [12.238]	1.406 [1.02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638** [0.115]	1.461 [0.963]	1.049** [0.218]	6.773 [4.835]	2.220** [0.534]
처치 전 추세선	0.994** [0.005]	1.000** [0.021]	1.010** [0.004]	1.016** [0.023]	0.997** [0.017]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238** [0.203]	0.413 [0.537]	0.677** [0.182]	6.430** [2.919]	-0.243 [0.61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1.813** [0.356]	0.345 [0.563]	0.364 [0.306]	31.485** [11.900]	-0.781 [0.706]
장려금 종료 1년 후	1.428** [0.464]	-0.322 [0.742]	0.188 [0.407]	32.668** [15.768]	-1.489 [0.942]
장려금 종료 2년 후	1.025** [0.519]	0.307 [0.831]	0.051 [0.461]	32.142* [17.866]	0.197 [1.058]
장려금 종료 3년 후	0.736 [0.728]	0.483 [1.254]	-0.877 [0.718]	18.35 [25.372]	0.263 [1.576]
업력(연수)	0.155 [0.602]	-0.368 [1.091]	0.065 [0.401]	-3.519 [12.240]	1.424 [1.02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622** [0.115]	1.463 [0.968]	1.044** [0.219]	5.693 [4.868]	2.257** [0.537]
처치 전 추세선	0.994** [0.005]	1.000** [0.022]	1.010** [0.004]	1.013** [0.023]	0.997** [0.017]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350** [0.208]	0.379 [0.566]	0.702** [0.187]	7.324** [2.967]	-0.379 [0.640]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3,730	358	2,678	318	1,474
관측치 총수	27,227	2,609	18,035	1,917	10,08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도소매업의 경우에 장려금 수혜 자체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하지만, 장려금액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0.68~0.70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
- 건설업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의 경우에 본 사업 지원금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함.

다.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12>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우리는 (4)~(5)열의 추정치들을 중심으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를 논의함.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757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9~3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2.5~12.9%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7~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33,697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3.757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7~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126,599.6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7~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의 총액은 약 3,820억 원임
 - 그러므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은 2017~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331.4명(=126,599.6/382.0)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5)열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99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3-12>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3.7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은 2017년도에 시작되고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확대되었으므로 장려금 수혜 종료 이후의 고용효과는 아직 추산하기 어려움.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장려금 종료 1년 후의 고용효과는 0을 기각하지 못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13>의 패널 A에 의하면,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단기효과는 제조업(4.66)에서 상대적으로 크고, 건설업(2.82), 도소매업(2.93), 음식숙박업(2.75)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3.20)의 경우에도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미하게 다름.
 - 본 사업이 2018년도에 본격적으로 확장되었으므로, 아직 증장기 고용효과를 추산하기는 이룸.
 - “청년추가고용 장려금”사업의 장려금 수혜 금액의 고용효과
 - <표 3-13>의 “※ 장려금 총액(천만 원)” 행은 (식 2)와 (식 3)의 처치변수(d)로서 장려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에서 수혜 금액의 추정치만을 뽑아 제시함.
 - 본 사업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건설업(2.82)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제조업(2.23), 도소매업(1.65), 음식숙박업(1.70) 및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1.56)의 경우에도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임.

〈표 3-12〉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9.117** [0.316]	7.366** [0.316]	7.386** [0.315]	3.757** [0.165]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989** [0.046]
업력(연수)		0.950** [0.285]	1.079** [0.285]	-0.034 [0.148]	0.012 [0.148]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648** [0.099]	5.608** [0.098]	0.208** [0.052]	-0.222** [0.053]
처치 전 추세선				1.005** [0.001]	0.998**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9.123** [0.316]	7.365** [0.316]	7.385** [0.315]	3.748** [0.165]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988** [0.046]
장려금 종료 1년 후	3.531 [6.190]	-0.692 [6.157]	-0.811 [6.146]	-4.77 [3.213]	-5.677* [3.204]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950** [0.285]	1.079** [0.285]	-0.034 [0.148]	0.013 [0.148]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648** [0.099]	5.608** [0.098]	0.209** [0.052]	-0.221** [0.053]
처치 전 추세선				1.005** [0.001]	0.998** [0.001]
상수항	23.240** [0.229]	21.079** [0.717]	-127.245 [568.453]	-0.741** [0.375]	-0.672* [0.374]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59,188	59,188	59,188	59,188	59,188
관측치 총수	364,244	364,244	364,244	364,244	364,24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13〉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664** [0.295]	2.815** [0.524]	2.927** [0.410]	2.754** [0.579]	3.202** [0.348]
업력(연수)	0.161 [0.325]	-0.244 [0.550]	-0.057 [0.335]	-0.318 [0.419]	0.012 [0.26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526** [0.070]	1.308* [0.683]	-1.185** [0.324]	-0.136 [0.540]	-1.205** [0.166]
처치 전 추세선	1.005** [0.002]	1.001** [0.005]	1.001** [0.002]	1.006** [0.009]	1.023**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225** [0.068]	2.821** [0.231]	1.648** [0.162]	1.698** [0.213]	1.558** [0.128]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4.646** [0.296]	2.815** [0.524]	2.927** [0.410]	2.754** [0.579]	3.199** [0.348]
장려금 종료 1년 후	-6.22 [4.419]	-3.137 [11.018]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162 [0.325]	-0.244 [0.550]	-0.057 [0.335]	-0.318 [0.419]	0.012 [0.26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527** [0.070]	1.308* [0.683]	-1.185** [0.324]	-0.136 [0.540]	-1.204** [0.166]
처치 전 추세선	1.005** [0.002]	1.001** [0.005]	1.001** [0.002]	1.006** [0.009]	1.023**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223** [0.068]	2.821** [0.231]	1.648** [0.162]	1.698** [0.213]	1.558** [0.12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9,182	2,086	10,986	1,120	8,082
관측치 총수	130,793	14,971	65,297	5,350	46,00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라.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14>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64.3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590~1,65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9~4.0%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711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64.34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1~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110,087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직장어린이집 지원” 장려금의 총액(고용보험 DB 기준)은 약 2,464억 원이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5,070억 원임.
 - 그러므로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고용보험 DB 기준) 약 446.8명(=110,085.7/246.4)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한편,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 기준으로는 217.1명(=110,085.7/507.0)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14>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6.60명 정도 증가시킴.

〈표 3-14〉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17.562** [40.078]	224.411** [39.948]	222.224** [39.919]	64.339** [25.077]	
장려금 총액 (천만 원)					6.607** [1.628]
업력(연수)		6.453 [6.294]	9.421 [6.482]	-7.049* [3.931]	-7.406** [3.773]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871** [0.465]	-1.893** [0.464]	0.213 [0.292]	0.17 [0.292]
처치 전 추세선				1.007** [0.019]	0.997** [0.01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218.437** [40.766]	225.326** [40.633]	225.042** [40.593]	67.641** [25.493]	
장려금 총액 (천만 원)					6.699** [1.635]
장려금 종료 1년 후	-15.106 [188.570]	-15.726 [187.791]	25.811 [188.160]	32.116 [117.037]	22.486 [116.058]
장려금 종료 2년 후	-24.465 [236.540]	-21.372 [235.564]	40.836 [236.487]	97.228 [146.823]	89.811 [145.795]
장려금 종료 3년 후	45.952 [369.392]	44.571 [367.865]	47.795 [367.367]	104.751 [229.261]	99.217 [228.183]
업력(연수)		6.419 [6.368]	9.135 [6.547]	-7.503* [3.977]	-7.697** [3.798]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872** [0.465]	-1.893** [0.464]	0.213 [0.292]	0.171 [0.292]
처치 전 추세선				1.007** [0.019]	0.997** [0.019]
상수항	1139.797** [32.885]	1060.046** [103.424]	6926.051** [3396.790]	32.566 [67.240]	46.195 [65.764]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244	244	244	244	244
관측치 총수	2,084	2,084	2,084	2,084	2,08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15〉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78.184** [28.717]		-39.456 [44.307]		
업력(연수)	-8.609* [4.485]		2.475 [6.569]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206 [0.311]		62.99 [41.689]		
처치 전 추세선	1.005** [0.020]		1.013** [0.05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8.204** [1.909]		-2.305 [2.28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82.111** [29.153]		-39.456 [44.307]		
장려금 종료 1년 후	62.176 [143.304]		. .		
장려금 종료 2년 후	101.2 [174.379]		. .		
장려금 종료 3년 후	123.159 [244.139]		. .		
업력(연수)	-9.119** [4.532]		2.475 [6.569]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205 [0.311]		62.99 [41.689]		
처치 전 추세선	1.005** [0.020]		1.013** [0.05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8.308** [1.917]		-2.305 [2.28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210		14		
관측치 총수	1,804		11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14>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67.6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3년 이후에도 양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지만,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직장어린이집 지원”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만 존재하고 수혜 종료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15>의 패널 A에 의하면, “직장어린이집 지원” 사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78.18)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도소매업에서의 고용효과는 음이지만 0의 효과를 기각하지 못함.
 - 다른 산업들의 경우 본 사업의 장려금이 투입되지 않았으므로 고용효과 추정치를 추정하지 않음.
- “직장어린이집 지원”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15>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제조업(8.20~8.31)에서만 유의하게 관측되고, 도소매업에서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마.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16>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0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1%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48,026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1.05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6~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50,427.3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 장려금의 총액은 (고용보험 DB 기준) 약 1,918억 원이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4,516억 원임.
 - 그러므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고용보험 DB 기준) 약 262.9명(=50,427.3/191.8)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한편,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 기준으로는 111.7명(=50,427.3/451.6)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16>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평균적으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함.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16>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1.0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표 3-16〉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5.755** [0.255]	3.512** [0.256]	3.537** [0.256]	1.050** [0.149]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17 [0.106]
업력(연수)		0.34 [0.347]	0.387 [0.347]	0.136 [0.202]	0.164 [0.202]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576** [0.076]	5.556** [0.076]	1.083** [0.045]	1.122** [0.046]
처치 전 추세선				1.006** [0.001]	1.006**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5.776** [0.256]	3.517** [0.257]	3.540** [0.257]	1.060** [0.150]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17 [0.106]
장려금 종료 1년 후	1.527 [1.786]	0.343 [1.776]	0.199 [1.775]	0.738 [1.035]	0.024 [1.031]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34 [0.347]	0.387 [0.347]	0.136 [0.202]	0.164 [0.202]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576** [0.076]	5.556** [0.076]	1.082** [0.045]	1.122** [0.046]
처치 전 추세선				1.006** [0.001]	1.006** [0.001]
상수항	27.262** [0.187]	25.831** [1.474]	-882.704 [693.916]	-2.092** [0.859]	-2.217** [0.85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74,192	74,192	74,192	74,192	74,192
관측치 총수	523,819	523,819	523,819	523,819	523,819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17〉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467** [0.339]	0.646** [0.289]	1.011** [0.191]	-0.386 [1.523]	1.103** [0.183]
업력(연수)	0.53 [0.642]	0.071 [0.433]	0.087 [0.231]	0.003 [1.375]	0.139 [0.20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409** [0.078]	1.724** [0.245]	1.050** [0.112]	0.515 [0.682]	0.939** [0.093]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2]	1.001** [0.004]	1.006** [0.002]	1.002** [0.016]	1.002**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646** [0.203]	-0.153 [0.520]	0.831** [0.234]	-10.985** [3.654]	0.903** [0.172]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1.485** [0.340]	0.646** [0.290]	1.022** [0.192]	-0.412 [1.529]	1.129** [0.184]
장려금 종료 1년 후	1.351 [2.388]	-0.006 [1.950]	0.653 [1.248]	-2.502 [12.610]	1.642 [1.218]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529 [0.642]	0.071 [0.433]	0.086 [0.231]	0.005 [1.375]	0.138 [0.20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408** [0.078]	1.724** [0.245]	1.049** [0.112]	0.514 [0.682]	0.938** [0.093]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2]	1.001** [0.004]	1.006** [0.002]	1.002** [0.016]	1.002**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646** [0.203]	-0.157 [0.520]	0.832** [0.234]	-11.014** [3.656]	0.907** [0.172]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26,524	3,912	12,748	766	11,184
관측치 총수	199,892	30,524	88,364	4,280	74,45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본 사업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원금 수혜 종료 1년 이후까지만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수혜 종료 1년 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17>의 패널 A에 의하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1.467), 도소매업(1.011)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103)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건설업(0.646)에서의 고용효과는 위의 산업들의 경우보다는 작고, 음식숙박업에서의 고용효과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17>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도소매업(0.831~0.832)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903~0.907)에서 유의한 크기로 관측됨.

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18>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16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3~2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0.7% 정도로만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2~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2,875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0.166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2~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2,137.3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2~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의 총액은 약 333억 원임
 - 그러므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은 2012~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최대 약 64.1명(=2,137.3/33.3)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18>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281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3-18>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275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지원금 수혜 종료 1~3년 이후에도 고용효과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본 사업은 지원금 수혜 당해 및 수혜 종료 이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의 고용효과를 만들어낸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19>의 패널 A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도소매업(0.140~0.150)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고, 제조업, 건설업, 음식숙박업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값을 보이지 않음.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고

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

〈표 3-18〉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3.087** [0.348]	2.723** [0.349]	2.494** [0.347]	0.166 [0.18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79* [0.161]
업력(연수)		0.698 [0.794]	1.350* [0.791]	0.291 [0.412]	0.292 [0.412]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7.684** [0.513]	7.656** [0.510]	1.585** [0.266]	1.580** [0.266]
처치 전 추세선				1.016** [0.002]	1.015** [0.002]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3.256** [0.367]	2.838** [0.368]	2.662** [0.366]	0.275 [0.19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81* [0.162]
장려금 종료 1년 후	0.303 [0.593]	0.114 [0.593]	0.496 [0.589]	0.184 [0.307]	0.09 [0.297]
장려금 종료 2년 후	0.715 [0.765]	0.436 [0.764]	0.693 [0.760]	0.028 [0.396]	-0.072 [0.387]
장려금 종료 3년 후	0.644 [1.004]	0.449 [1.003]	0.317 [0.998]	0.4 [0.520]	0.295 [0.513]
업력(연수)		0.681 [0.794]	1.329* [0.791]	0.285 [0.412]	0.291 [0.412]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7.667** [0.513]	7.632** [0.511]	1.574** [0.266]	1.580** [0.266]
처치 전 추세선				1.016** [0.002]	1.015** [0.002]
상수항	19.802** [0.305]	16.138** [4.256]	1750.151 [1581.814]	-3.091 [2.207]	-3.105 [2.207]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4,988	14,988	14,988	14,988	14,988
관측치 총수	118,569	118,569	118,569	118,569	118,569

주 :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19〉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0.078 [0.062]	-0.1 [0.187]	0.140* [0.080]	-0.157 [0.224]	0.255 [0.662]
업력(연수)	-0.056 [0.173]	-0.079 [0.458]	0.068 [0.159]	-0.334 [0.433]	-0.088 [1.11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370** [0.087]	2.121** [0.301]	0.458** [0.120]	0.654 [0.686]	0.645 [1.184]
처치 전 추세선	1.082** [0.003]	0.990** [0.011]	1.022** [0.008]	1.003** [0.017]	1.001** [0.011]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153** [0.325]	1.232 [1.116]	1.404** [0.529]	-2.979* [1.601]	-1.811 [1.978]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0.02 [0.065]	0.067 [0.197]	0.150* [0.085]	-0.12 [0.236]	0.178 [0.701]
장려금 종료 1년 후	-0.179* [0.104]	0.284 [0.289]	-0.04 [0.131]	0.157 [0.378]	-0.395 [1.173]
장려금 종료 2년 후	-0.078 [0.135]	0.820** [0.351]	0.179 [0.176]	0.709 [0.520]	0.014 [1.481]
장려금 종료 3년 후	-0.237 [0.181]	0.957** [0.431]	0.194 [0.246]	0.285 [0.687]	-0.458 [1.923]
업력(연수)	-0.051 [0.173]	-0.071 [0.458]	0.068 [0.159]	-0.343 [0.433]	-0.08 [1.11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376** [0.087]	2.122** [0.301]	0.457** [0.120]	0.652 [0.686]	0.663 [1.185]
처치 전 추세선	1.082** [0.003]	0.990** [0.011]	1.023** [0.008]	1.004** [0.017]	1.001** [0.011]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306** [0.330]	1.732 [1.131]	1.435** [0.538]	-2.724* [1.625]	-1.966 [1.99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6,192	960	1,912	370	672
관측치 총수	49,514	8,112	15,186	2,592	5,41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19>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도소매업(1.404~1.43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취하고, 나머지 산업들에서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거나 음의 값을 보임.

사.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20>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33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99~10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0.3% 정도로만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4~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시간선택제 전환”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3,860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0.334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4~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1,289.2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4~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시간선택제 전환”사업 지원금의 총액은 약 200억 원임.
 - 그러므로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은 2014~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최대 약 64.5명(=1,289.2/20.0)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20>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2.57명 정도 감소시킴.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20>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607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를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3년 이후에도 고용효과 추정치는 양의 값을 갖지만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 및 수혜 종료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21>의 패널 A에 의하면,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는 분석 대상 5개 산업에서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함.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0〉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162* [2.428]	1.666 [2.431]	1.54 [2.424]	0.334 [1.54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570* [1.436]
업력(연수)		3.427 [3.615]	5.12 [3.613]	0.693 [2.291]	0.734 [2.29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893** [0.402]	4.855** [0.401]	1.710** [0.255]	1.747** [0.255]
처치 전 추세선				0.998** [0.005]	0.999** [0.005]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5.685** [2.611]	2.292 [2.621]	2.065 [2.614]	0.607 [1.66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2.538* [1.455]
장려금 종료 1년 후	9.043** [4.456]	5.02 [4.459]	4.465 [4.448]	0.232 [2.826]	-0.773 [2.692]
장려금 종료 2년 후	-1.838 [7.430]	-5.264 [7.419]	-5.168 [7.404]	4.576 [4.703]	3.358 [4.593]
장려금 종료 3년 후	7.273 [19.415]	5.526 [19.373]	6.312 [19.334]	2.556 [12.279]	1.33 [12.225]
업력(연수)		3.372 [3.616]	5.073 [3.615]	0.664 [2.292]	0.729 [2.29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868** [0.403]	4.833** [0.402]	1.704** [0.256]	1.749** [0.255]
처치 전 추세선				0.999** [0.005]	0.999** [0.005]
상수항	82.350** [2.209]	68.577** [15.032]	4972.993 [7219.480]	-9.704 [9.534]	-9.984 [9.53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5,276	5,276	5,276	5,276	5,276
관측치 총수	38,048	38,048	38,048	38,048	38,04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21〉 “시간선택제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3.446 [4.182]	-0.991 [0.642]	-0.323 [2.272]	1.764 [7.021]	1.873 [1.468]
업력(연수)	1.341 [8.629]	0.328 [0.809]	0.323 [2.270]	-0.578 [5.325]	0.337 [2.207]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435** [0.492]	0.739 [0.516]	0.473 [0.874]	7.646** [1.409]	0.02 [0.659]
처치 전 추세선	0.999** [0.009]	1.002** [0.028]	1.000** [0.007]	0.969** [0.045]	1.002** [0.022]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96 [4.216]	-0.004 [1.218]	3.905 [2.396]	1.447 [9.612]	1.271 [1.384]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3.11 [4.493]	-0.895 [0.690]	-0.204 [2.454]	-1.853 [7.445]	2.045 [1.597]
장려금 종료 1년 후	-0.436 [7.514]	0.943 [1.229]	-2.087 [4.228]	1.026 [14.592]	-0.752 [2.689]
장려금 종료 2년 후	-3.49 [12.693]	-0.728 [1.816]	7.829 [7.395]	-37.468** [18.453]	4.503 [4.335]
장려금 종료 3년 후	5.3 [34.021]	.	6.828 [16.130]	-47.811** [23.764]	4.299 [10.707]
업력(연수)	1.368 [8.632]	0.322 [0.810]	0.321 [2.272]	0.136 [5.309]	0.322 [2.208]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436** [0.493]	0.695 [0.518]	0.462 [0.878]	7.154** [1.473]	0.019 [0.665]
처치 전 추세선	0.999** [0.009]	1.001** [0.028]	1.001** [0.007]	0.974** [0.045]	1.003** [0.022]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696 [4.280]	0.254 [1.251]	4.097* [2.437]	-1.045 [9.670]	1.282 [1.410]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584	204	912	76	702
관측치 총수	11,980	1,581	6,272	480	4,88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아. “정규직 전환”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22>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4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00~10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3.3~3.4%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5~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정규직 전환”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2,017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3.44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5~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6,938.5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5~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정규직 전환” 사업 장려금의 총액은 약 253억 원임

- 그러므로 “정규직 전환” 사업은 2015~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274.2명(=6,938.5/25.3)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22>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정규직 전환” 사업의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5)열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96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정규직 전환”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22>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3.301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표 3-22〉 “정규직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2.659** [1.993]	10.309** [1.976]	10.587** [1.953]	3.440** [1.152]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960** [0.311]
업력(연수)		4.411 [3.729]	4.453 [3.696]	0.459 [2.173]	0.569 [2.173]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436** [0.296]	5.383** [0.292]	0.233 [0.175]	0.231 [0.175]
처치 전 추세선				1.004** [0.006]	1.003** [0.006]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17.461** [2.102]	13.790** [2.092]	13.922** [2.069]	3.301** [1.222]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926** [0.314]
장려금 종료 1년 후	25.277** [4.382]	18.405** [4.356]	17.913** [4.310]	0.048 [2.543]	-1.307 [2.431]
장려금 종료 2년 후	45.651** [9.047]	27.198** [9.017]	24.004** [8.920]	-5.283 [5.262]	-6.807 [5.197]
장려금 종료 3년 후	38.437 [31.297]	39.479 [30.981]	38.443 [30.638]	0.335 [18.070]	-1.4 [18.049]
업력(연수)		4.014 [3.727]	4.093 [3.695]	0.473 [2.174]	0.594 [2.173]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5.255** [0.298]	5.216** [0.295]	0.251 [0.176]	0.257 [0.176]
처치 전 추세선				1.004** [0.006]	1.004** [0.006]
상수항	80.250** [1.819]	61.173** [17.928]	3220.96 [7383.514]	-8.704 [10.464]	-9.208 [10.45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2,438	2,438	2,438	2,438	2,438
관측치 총수	17,563	17,563	17,563	17,563	17,563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23〉 “정규직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602** [1.571]	1.784 [24.179]	1.378 [1.626]	-0.451 [9.473]	2.055 [2.554]
업력(연수)	0.335 [4.906]	0.743 [17.002]	0.324 [2.323]	2.651* [1.536]	7.282* [3.82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286 [0.205]	3.007 [9.343]	2.270** [0.411]	0.113 [1.382]	0.732 [0.555]
처치 전 추세선	0.996** [0.013]	1.044** [0.053]	0.973** [0.011]	1.005** [0.043]	0.995** [0.020]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12** [0.349]	-1.045 [10.830]	0.58 [0.494]	-1.04 [2.540]	1.223 [1.48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5.276** [1.670]	2.347 [24.882]	1.615 [1.722]	-0.629 [9.956]	2.979 [2.734]
장려금 종료 1년 후	5.342 [3.452]	6.83 [69.267]	-0.236 [3.608]	-13.547 [21.295]	3.241 [5.540]
장려금 종료 2년 후	-4.638 [6.862]	. .	11.241 [8.729]	128.168* [71.327]	14.871 [10.953]
장려금 종료 3년 후	2.292 [17.107]	. .	4.948 [23.413]
업력(연수)	0.262 [4.906]	0.679 [17.041]	0.305 [2.325]	2.813* [1.606]	7.190* [3.827]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283 [0.206]	3.035 [9.362]	2.172** [0.418]	-1.715 [1.690]	0.698 [0.560]
처치 전 추세선	0.995** [0.013]	1.044** [0.053]	0.973** [0.011]	1.006** [0.043]	0.994** [0.020]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39** [0.351]	-0.991 [10.873]	0.588 [0.497]	-0.598 [2.584]	1.419 [1.512]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910	52	464	78	262
관측치 총수	6601	374	3233	503	186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이후 1~3년까지의 고용효과 추정치들은 공히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정규직 전환”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만 존재하고 수혜 종료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23>의 패널 A에 의하면, “정규직 전환” 사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4.60~5.28)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고, 다른 4개의 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크기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정규직 전환”사업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23>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제조업(1.41~1.44)에서만 유의하게 관측되고, 다른 4개의 산업의 경우에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자.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24>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 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557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63~6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약 0.9% 정도 감소시킴.

〈표 3-24〉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012** [1.155]	2.150* [1.150]	2.096* [1.148]	-0.557 [0.785]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765** [0.263]
업력(연수)		-1.729 [1.936]	-1.014 [1.950]	0.231 [1.321]	0.248 [1.32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360** [0.214]	3.337** [0.214]	0.876** [0.148]	0.924** [0.148]
처치 전 추세선				0.998** [0.008]	0.998** [0.008]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5.041** [1.188]	2.650** [1.188]	2.590** [1.186]	-0.697 [0.81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792** [0.265]
장려금 종료 1년 후	12.916** [3.415]	5.959* [3.413]	5.902* [3.413]	-1.965 [2.330]	-2.263 [2.276]
장려금 종료 2년 후	4.31 [8.602]	1.649 [8.522]	1.426 [8.516]	1.905 [5.814]	1.66 [5.791]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1.763 [1.936]	-1.042 [1.950]	0.241 [1.321]	0.255 [1.32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309** [0.216]	3.288** [0.216]	0.892** [0.149]	0.941** [0.149]
처치 전 추세선				0.998** [0.008]	0.998** [0.008]
상수항	50.945** [0.896]	59.580** [9.492]	-4275.53 [3899.111]	-3.95 [6.498]	-4.052 [6.495]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858	1,858	1,858	1,858	1,858
관측치 총수	13,930	13,930	13,930	13,930	13,93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참고로 <표 3-2>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346개임. 그리고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사업 지원금의 총액은 약 188억 원임.
- <표 3-24>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사업의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765명 정도 감소시킴.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3-24>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697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를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2년 이후에도 고용효과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 및 수혜 종료 이후에도 유의미한 정도로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25>의 패널 A에 의하면, “일가정양립 환경개선”사업의 고용효과는 분석 대상 5개 산업에서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함.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

〈표 3-25〉 “일가정양립 환경개선”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432 [0.951]	-2.262 [2.298]	-0.126 [0.793]	5.715 [4.861]	1.724 [1.504]
업력(연수)	2.225 [3.287]	0.769 [9.319]	0.107 [0.586]	-1.240* [0.699]	0.32 [1.92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033** [0.158]	0.194 [1.265]	0.768** [0.278]	-0.07 [1.454]	0.168 [0.339]
처치 전 추세선	0.991** [0.012]	0.999** [0.045]	1.024** [0.013]	0.994** [0.080]	0.998** [0.026]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685** [0.297]	-0.736 [0.890]	-1.527** [0.401]	-0.937 [2.136]	0.298 [0.847]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1.517 [0.982]	-2.271 [2.323]	0.019 [0.810]	5.715 [4.861]	1.617 [1.541]
장려금 종료 1년 후	-2.035 [2.735]	-0.263 [9.401]	2.791 [3.134]	.	-1.782 [5.505]
장려금 종료 2년 후	4.98 [5.799]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2.237 [3.287]	0.771 [9.333]	0.099 [0.586]	-1.240* [0.699]	0.329 [1.92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042** [0.158]	0.194 [1.267]	0.718** [0.283]	-0.07 [1.454]	0.169 [0.339]
처치 전 추세선	0.991** [0.012]	0.999** [0.045]	1.024** [0.013]	0.994** [0.080]	0.999** [0.026]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710** [0.299]	-0.734 [0.893]	-1.505** [0.403]	-0.937 [2.136]	0.247 [0.852]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858	46	208	18	194
관측치 총수	6,747	394	1,506	121	1,35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차.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26>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9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최대 약 8.9%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8년도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750개 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1.96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8년에 본 사업을 통해 총 1,470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8년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신중년 적합업무” 장려금의 총액은 약 32억 원임.
 - 그러므로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은 2018년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459.4명(=1,470/3.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26>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을 약 1.156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양의

값을 가질 수 있음.

〈표 3-26〉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205** [0.899]	1.594* [0.911]	1.663* [0.909]	1.960** [0.696]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156 [0.938]
업력(연수)		0.738 [0.797]	0.645 [0.799]	0.067 [0.608]	0.095 [0.609]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267** [0.251]	3.034** [0.253]	0.569** [0.195]	0.629** [0.196]
처치 전 추세선				0.994** [0.013]	0.993** [0.013]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4.205** [0.899]	1.594* [0.911]	1.663* [0.909]	1.960** [0.696]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156 [0.938]
장려금 종료 1년 후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738 [0.797]	0.645 [0.799]	0.067 [0.608]	0.095 [0.609]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267** [0.251]	3.034** [0.253]	0.569** [0.195]	0.629** [0.196]
처치 전 추세선				0.994** [0.013]	0.993** [0.013]
상수항	15.795** [0.598]	13.460** [2.617]	-505.767 [1595.929]	-1.354 [2.009]	-1.431 [2.00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402	1,402	1,402	1,402	1,402
관측치 총수	9,401	9,401	9,401	9,401	9,40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27〉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908** [1.138]	-0.584 [1.804]	0.389 [1.066]		3.042* [1.791]
업력(연수)	-0.039 [1.089]	0.133 [0.195]	-0.099 [0.576]		0.528 [1.37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905** [0.311]	3.280** [1.084]	0.981** [0.305]		-1.751** [0.768]
처치 전 추세선	0.990** [0.020]	0.978** [0.044]	0.981** [0.041]		1.019** [0.02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3.500* [2.110]	-0.814 [3.670]	0.964 [1.919]		3.566* [2.088]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2.908** [1.138]	-0.584 [1.804]	0.389 [1.066]		3.042* [1.791]
장려금 종료 1년 후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039 [1.089]	0.133 [0.195]	-0.099 [0.576]		0.528 [1.37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905** [0.311]	3.280** [1.084]	0.981** [0.305]		-1.751** [0.768]
처치 전 추세선	0.990** [0.020]	0.978** [0.044]	0.981** [0.041]		1.019** [0.02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3.500* [2.110]	-0.814 [3.670]	0.964 [1.919]		3.566* [2.08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764	86	188		108
관측치 총수	5,204	664	1,221		720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본 사업은 2018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원금 수혜 종료 이후의 고용효과는 추정할 수 없음.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27>의 패널 A에 의하면, “신중년 적합업무” 사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2.908)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042)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건설업과 도소매업에서의 고용효과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신중년 적합업무”사업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27>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제조업(3.500)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566)에서 유의한 크기로 관측됨.

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28>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5.537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109~12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6~5.1% 정도 증가시킴.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891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5.537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8년에 본 사업을 통해 총 4,933.5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3-2>에 의하면,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일자리 함께하기” 장려금의 총액은 약 572억 원임
 - 그러므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은 2011~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86.2명(=4,933.5/57.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3-28>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을 약 0.338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28>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5.1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년 이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수혜 종료 3년 이후 매우 큰 수치의 추정치가 나타나는 현상은 특이치 때문인 것으로 추측됨.
 -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는 장려금 수혜 당해에만 존재하고 수혜 종료 이후에는 사라지는 것으로 추정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29>의 패널 A에 의하면,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는 제조업(4.933), 도소매업(4.540)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010)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음식숙박업에서의 고용효과는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표 3-28〉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0.249** [2.925]	6.623** [2.745]	5.751** [2.755]	5.537** [1.970]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338** [0.118]
업력(연수)		2.118 [10.643]	2.713 [10.635]	-0.15 [7.637]	-0.049 [7.63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5.340** [0.513]	15.338** [0.513]	6.058** [0.387]	5.970** [0.389]
처치 전 추세선				0.949** [0.012]	0.949** [0.012]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14.300** [3.079]	9.678** [2.893]	8.645** [2.910]	5.111** [2.079]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342** [0.119]
장려금 종료 1년 후	10.734** [4.664]	2.636 [4.385]	1.703 [4.399]	-1.997 [3.150]	-3.025 [3.062]
장려금 종료 2년 후	13.709** [5.721]	10.964** [5.368]	10.483* [5.373]	0.332 [3.858]	-0.623 [3.790]
장려금 종료 3년 후	32.046** [6.974]	25.609** [6.546]	25.954** [6.546]	10.841** [4.706]	9.880** [4.643]
업력(연수)		1.58 [10.632]	2.182 [10.625]	-0.212 [7.637]	-0.082 [7.63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5.281** [0.514]	15.283** [0.513]	6.076** [0.387]	5.979** [0.390]
처치 전 추세선				0.948** [0.012]	0.948** [0.012]
상수항	93.286** [2.635]	83.242 [68.107]	3043.906 [21256.161]	0.116 [48.931]	-0.766 [48.91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934	934	934	934	934
관측치 총수	7,425	7,425	7,425	7,425	7,42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29〉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4.933** [2.144]		4.540* [2.571]	-0.469 [5.348]	13.010** [6.079]
업력(연수)	-0.166 [7.851]		0.335 [0.324]	-0.625 [0.520]	0.359 [0.699]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587** [0.415]		0.549 [0.533]		-2.988 [3.341]
처치 전 추세선	0.934** [0.014]		0.966** [0.052]	0.737** [0.229]	1.126** [0.142]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77** [0.126]		1.869** [0.853]	0.459 [4.330]	10.491** [2.30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3.467 [2.277]		5.966** [2.607]	0.461 [6.160]	11.105 [6.755]
장려금 종료 1년 후	-4.182 [3.472]		6.313** [3.123]	2.901 [4.884]	-2.616 [6.736]
장려금 종료 2년 후	-4.543 [4.350]		7.916** [3.391]	0.351 [4.972]	-6.283 [6.616]
장려금 종료 3년 후	6.231 [5.476]		-2.026 [4.219]	-2.576 [5.337]	-4.593 [6.532]
업력(연수)	-0.038 [7.852]		0.154 [0.323]	-0.628 [0.549]	0.288 [0.718]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622** [0.416]		0.518 [0.521]		-3.194 [3.482]
처치 전 추세선	0.934** [0.014]		0.950** [0.052]	0.746** [0.245]	1.145** [0.147]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58** [0.127]		2.072** [0.841]	1.194 [4.821]	10.597** [2.535]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832		18	6	8
관측치 총수	6,561		155	44	68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일자리 함께하기”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표 3-29>의 패널 A에서 이미 확인한 바와 같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제조업(0.258~0.277), 도소매업(1.869~2.072)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0.49~10.60)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음식숙박업의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추정치가 관측되지 않음.

타.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30>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 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524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1~32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 약 4.9% 정도 감소시킴.
 - 참고로, <표 3-2>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81개임. 그리고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의 총액은 약 50억 원임.
 - <표 3-30>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878명 정도 감소시킴.

〈표 3-30〉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0.491 [2.071]	-1.226 [2.070]	-1.117 [2.066]	-1.524 [1.127]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878** [0.411]
업력(연수)		1.345 [3.956]	0.657 [3.949]	0.762 [2.154]	0.749 [2.15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04** [0.578]	2.141** [0.576]	0.819** [0.316]	0.869** [0.317]
처치 전 추세선				0.997** [0.020]	0.998** [0.020]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0.616 [2.184]	-1.468 [2.185]	-1.106 [2.182]	-2.049* [1.188]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955** [0.416]
장려금 종료 1년 후	-0.631 [4.262]	-1.051 [4.241]	0.342 [4.245]	-3.708 [2.307]	-3.242 [2.222]
장려금 종료 2년 후	-1.2 [8.068]	-2.949 [8.037]	-1.153 [8.053]	-0.086 [4.371]	0.398 [4.316]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1.375 [3.960]	0.655 [3.954]	0.831 [2.154]	0.786 [2.15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118** [0.579]	2.145** [0.577]	0.825** [0.316]	0.868** [0.317]
처치 전 추세선				0.998** [0.020]	0.999** [0.020]
상수항	21.164** [1.753]	13.458 [22.415]	42 [7880.809]	-8.565 [12.198]	-8.349 [12.17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48	148	148	148	148
관측치 총수	1,177	1,177	1,177	1,177	1,177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31〉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885 [1.634]		-0.398 [2.407]	-1.899 [2.858]	-0.257 [1.308]
업력(연수)	1.25 [2.489]		-0.141 [0.314]	0.1 [0.516]	0.066 [0.212]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114** [0.397]		-1.158 [1.069]	-0.201 [0.555]	7.253 [15.268]
처치 전 추세선	0.993** [0.027]		1.009** [0.038]	1.078* [0.570]	1.044** [0.175]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860* [0.494]		-1.435 [2.332]	-2.743 [2.909]	-0.754 [1.176]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2.18 [1.732]		-2.546 [2.483]	-2.399 [3.116]	-0.308 [1.362]
장려금 종료 1년 후	-2.211 [3.376]		-14.166** [4.626]	-1.207 [5.194]	-0.34 [2.207]
장려금 종료 2년 후	0.537 [6.257]		-4.612 [8.805]	-2.835 [5.831]	. .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1.288 [2.492]		0.113 [0.323]	0.245 [0.606]	0.079 [0.23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110** [0.400]		-0.96 [1.051]	-0.242 [0.585]	8.427 [17.212]
처치 전 추세선	0.993** [0.027]		1.020** [0.038]	1.094* [0.591]	1.043** [0.176]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887* [0.500]		-3.117 [2.363]	-3.184 [3.135]	-0.821 [1.21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92		28	6	8
관측치 총수	734		236	44	6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30>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2.049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2년 이후의 고용효과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 못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는 음 또는 영의 값을 취하고, 수혜 종료 이후에는 유의미한 크기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31>의 패널 A에 의하면, “장년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는 분석 대상 5개 산업에서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함.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

파. “고용유지지원금” 사업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3-32>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718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6~4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4.8% 정도 감소시킴.
- 참고로, <표 3-2>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0,377임. 그리고 “고용유지지원금”의 총액(고용보험 DB 기준)은 약 2,641억 원이고,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3,143억 원임.
- <표 3-32>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고용유지지원금”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30명 정도 감소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3-30>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2.505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당해에 관측되는 부의 고용효과는 지원금 수혜 종료 1~3년 이후에도 유의미한 크기로 관측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3-33>의 패널 A에 의하면,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음의 고용효과는 주로 제조업(-1.955), 건설업(-1.653)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3.954)에서 관측됨.
-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의 고용효과가 관측되지 않음.

〈표 3-32〉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3.615** [0.502]	-3.450** [0.501]	-3.537** [0.500]	-1.718** [0.247]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96** [0.014]
업력(연수)		-0.316 [1.086]	0.335 [1.089]	0.363 [0.536]	0.354 [0.53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679** [0.347]	-6.638** [0.347]	2.304** [0.172]	2.539** [0.172]
처치 전 추세선				1.019** [0.002]	1.009** [0.002]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5.526** [0.531]	-5.310** [0.530]	-5.525** [0.530]	-2.505** [0.262]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300** [0.014]
장려금 종료 1년 후	-5.477** [0.685]	-5.275** [0.684]	-5.599** [0.684]	-2.717** [0.338]	-2.073** [0.325]
장려금 종료 2년 후	-5.978** [0.783]	-5.789** [0.781]	-6.049** [0.781]	-2.600** [0.386]	-1.965** [0.374]
장려금 종료 3년 후	-4.886** [0.905]	-4.785** [0.903]	-5.234** [0.904]	-1.800** [0.446]	-1.179** [0.436]
업력(연수)		-0.081 [1.085]	0.642 [1.089]	0.469 [0.536]	0.417 [0.53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6.619** [0.347]	-6.572** [0.346]	2.328** [0.172]	2.555** [0.172]
처치 전 추세선				1.018** [0.002]	1.009** [0.002]
상수항	33.261** [0.446]	33.705** [5.693]	1270.734 [2176.658]	-5.883** [2.813]	-5.264* [2.806]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1,390	11,390	11,390	11,390	11,390
관측치 총수	87,586	87,586	87,586	87,586	87,58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3-33〉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1.955** [0.308]	-1.663** [0.688]	-0.259 [0.178]	0.400 [1.835]	-3.954** [0.717]
업력(연수)	-0.19 [0.864]	-3.453 [5.101]	0.149 [0.174]	4.325* [2.214]	0.826 [2.835]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380** [0.202]	0.305 [1.835]	0.239* [0.132]	9.972** [2.595]	2.128** [0.495]
처치 전 추세선	1.032** [0.003]	1.008** [0.023]	1.051** [0.012]	1.002** [0.023]	1.006** [0.021]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86** [0.015]	-1.334** [0.451]	-0.015 [0.058]	-0.177 [0.541]	-1.439** [0.18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2.862** [0.326]	-1.601** [0.731]	-0.054 [0.190]	-0.433 [1.960]	-5.262** [0.751]
장려금 종료 1년 후	-3.205** [0.426]	-1.500* [0.889]	-0.725** [0.230]	-3.322 [2.372]	-4.448** [1.041]
장려금 종료 2년 후	-2.906** [0.483]	-0.565 [0.908]	-0.952** [0.269]	-1.738 [2.883]	-3.572** [1.256]
장려금 종료 3년 후	-1.827** [0.566]	0.466 [1.028]	-0.588* [0.318]	-1.135 [3.196]	-3.834** [1.466]
업력(연수)	-0.07 [0.863]	-3.403 [5.103]	0.177 [0.174]	4.399** [2.216]	1.103 [2.827]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2.389** [0.202]	0.119 [1.855]	0.286** [0.132]	9.980** [2.601]	2.233** [0.494]
처치 전 추세선	1.031** [0.003]	1.007** [0.023]	1.046** [0.012]	1.000** [0.023]	1.001** [0.021]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291** [0.015]	-1.425** [0.459]	-0.056 [0.059]	-0.274 [0.547]	-1.559** [0.19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8,474	274	640	222	590
관측치 총수	65,914	2,263	4,671	1,453	4,416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수혜집단별 고용효과 분석

- 본 장에서는 제3장에서 세부사업별로 시행한 고용효과 분석을 수혜집단별로 사업군을 구분하여 적용함.
 - 14개 고용보조금 세부사업들을 5개의 수혜집단, 즉 여성, 고령층, 청년층, 중장년층 및 기타 집단으로 구분한 후 각 수혜집단에 적용된 세부사업들을 하나의 사업군으로 설정하여 제3장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분석을 시행함.
- 고용보조금 14개 세부사업들을 아래와 같이 5개 수혜집단 사업군으로 분류함.
 - 여성 대상 사업군(1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
 - 고령층 대상 사업군(1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 청년층 대상 사업군(2개): 청년추가고용,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장년 대상 사업군(2개): 신중년적합업무,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8개): 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시간선택제전환,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
- 아래 <표 4-1>는 수혜집단 5개 사업군별 및 연도별로 2010~2018년 기간 동안 해당 사업군의 고용보조금을 수혜 받은 사업체들의 수를 제시함.
 - <표 4-1>의 'A. 보조금 총액' 행은 해당 사업군에 투입된 보조금 총액, 'B. 추정치' 행은 아래에서 추정할 각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치, 'C. 고용규모 증가율' 행은 위 추정치를 토대로 계산한 고용규모 증가

을, 'D. 고용효과(/10억 원)' 행은 각 사업군의 보조금 10억 원당 고용효과를 요약해 제시함.

〈표 4-1〉 수혜집단별 사업군의 처치 사업체수

연도	1. 여성	2. 고령층	3. 청년층	4. 중장년층	5. 기타 집단
2010	2,633	0	0	0	1
2011	2,364	0	0	0	1,629
2012	3,330	347	0	0	4,276
2013	3,454	677	0	0	8,189
2014	3,635	947	0	0	18,584
2015	4,535	1,683	0	0	30,846
2016	5,760	2,507	2	39	40,512
2017	6,414	3,145	9,994	67	37,158
2018	6,299	3,569	71,727	825	20,527
총계	38,424	12,875	81,723	931	161,722
A. 보조금 총액(억 원)	3,395	333	5,738 [8,336]	82	14,072 [17,180]
B. 추정치	1.093**	0.166	1.912**	0.313	0.540**
C. 고용규모증가율(%)	1.8~1.9	0~0.7	6.2	0~1.3	2.3~2.6
D. 고용효과(/10억 원)	123.7	64.1	272.3 [187.3]	35.5	62.1 [50.8]

주 : 1) A. 보조금 총액(억 원)은 고용보험 DB내 수혜 금액의 합임. []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산(일반예산+고용보험)임.

2) B. 추정치에서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3) D. 고용효과(10억 원)는 "10억 원당 고용효과=총계*추정치/보조금총액/10"임. 여기서 '추정치'는 전체 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효과 추정결과 '패널 A. 단기효과'(4)열 추정치임. []는 고용노동부에서 집행한 총예산(일반예산+고용보험) 기준 추산 결과임.

제1절 여성 및 고령층 대상 지원금

- 여성 대상 지원금 사업군에는 1개 사업(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만이 포함됨.
 - 그러므로 여성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는 제3장의 제3절.가에 제시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지원”사업의 분석결과와 동일함.
- 고령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에도 1개 사업(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만이 포함됨.
 - 고령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도 마찬가지로 제3장의 제3절.바에 제시된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사업의 분석결과와 동일함.

제2절 청년층 대상 지원금

- 청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에도 2개 사업(청년추가고용, 청년내일채움 공제)이 포함됨.
 - 우리는 이들 2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설정하고, 제3장에서 각 세부사업에 대해 적용한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4-2>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 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청년층 대상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912명 정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

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청년층 대상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31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이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6.2% 정도 증가시킴.
- <표 4-1>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81,723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1.912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6~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156,254.4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4-1>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장려금 총액은 (고용보험 DB 기준) 약 5,738억 원이고, 식별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8,336억 원임.
- 그러므로 청년층 대상 사업군은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고용보험 DB 기준) 약 272.3명(=156,254.4/573.8)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한편,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 기준으로는 187.3명(=156,254.4/833.6)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4-2>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492명 정도 증가시킴.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4-2>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1.91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은 2017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지원금 수혜 종료 1년 이후까지만 고용효과를 추정할 수 있음. 수혜 종료 1년 후의 고용효과는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 못함.

〈표 4-2〉 “청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6.296** [0.219]	5.943** [0.219]	5.958** [0.218]	1.912** [0.118]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92** [0.040]
업력(연수)		0.434* [0.261]	0.598** [0.261]	0.071 [0.141]	0.089 [0.14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989** [0.090]	4.970** [0.090]	0.166** [0.049]	0.142** [0.049]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1]	1.004**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6.289** [0.220]	5.929** [0.219]	5.942** [0.219]	1.910** [0.119]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91** [0.040]
장려금 종료 1년 후	-0.808 [1.855]	-1.465 [1.851]	-1.658 [1.849]	-0.213 [0.999]	-0.811 [0.995]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435* [0.261]	0.599** [0.262]	0.071 [0.141]	0.09 [0.141]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989** [0.090]	4.970** [0.090]	0.166** [0.049]	0.143** [0.049]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1]	1.004** [0.001]
상수항	24.351** [0.163]	22.857** [0.925]	-578.958 [522.9]	-1.535** [0.500]	-1.511** [0.49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12,446	112,446	112,446	112,446	112,446
관측치 총수	750,071	750,071	750,071	750,071	750,07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4-3〉 “청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338** [0.257]	1.435** [0.245]	1.646** [0.197]	2.235 [1.444]	1.485** [0.151]
업력(연수)	0.203 [0.389]	0.013 [0.350]	0.046 [0.211]	-0.065 [1.257]	0.059 [0.15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718** [0.079]	0.988** [0.454]	-0.547** [0.206]	-6.868** [1.639]	-0.353** [0.120]
처치 전 추세선	1.010** [0.002]	1.005** [0.004]	1.003** [0.002]	1.001** [0.011]	1.022** [0.002]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26** [0.072]	2.353** [0.166]	1.363** [0.102]	7.122** [0.514]	1.692** [0.06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2.329** [0.258]	1.435** [0.245]	1.652** [0.197]	2.22 [1.446]	1.499** [0.151]
장려금 종료 1년 후	-0.988 [2.161]	0.045 [1.911]	0.578 [1.642]	-2.856 [17.280]	1.242 [1.213]
장려금 종료 2년 후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204 [0.389]	0.013 [0.350]	0.046 [0.211]	-0.064 [1.257]	0.058 [0.15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0.719** [0.079]	0.987** [0.454]	-0.546** [0.206]	-6.872** [1.640]	-0.353** [0.120]
처치 전 추세선	1.010** [0.002]	1.005** [0.004]	1.003** [0.002]	1.001** [0.011]	1.022** [0.002]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425** [0.072]	2.352** [0.166]	1.363** [0.102]	7.121** [0.514]	1.693** [0.069]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38,170	5,332	20,378	1,756	16,110
관측치 총수	275,946	40,556	131,959	8,937	101,12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4-3>의 패널 A에 의하면,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고용효과는 제조업(2.338), 음식숙박업(2.235)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건설업(1.435), 도소매업(1.646)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485)의 고용효과는 위의 산업들의 경우보다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른 크기임.
- 청년층 대상 사업군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제조업(1.426), 건설업(2.353), 도소매업(1.363), 음식숙박업(7.12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692)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크기로 관측됨.

제3절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에는 2개 사업(신증년적합업무, 장년근로 시간단축지원금)이 포함됨.
 - 우리는 이들 2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설정하고, 제3장에서 각 세부사업에 대해 적용한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4-4>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 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313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거나 최대 1.3%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표 4-1>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931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0~0.313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6~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0~291.4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4-1>에 의하면,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의 장려금 총액은 약 82억 원임
 - 그러므로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은 2016~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약 0~35.5명(=291.4/8.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4-4>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1.771명 정도 감소시킴.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의 중장기 고용효과
- <표 4-4>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149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르지 않음.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2년 이후의 고용효과 추정치들은 음수이거나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 못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에는 영의 값을 취하고, 수혜 종료 이후에는 부정적인 고용효과 또는 유의하지 않은 크기의 고용효과를

보여줌.

〈표 4-4〉 “증장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3.300** [0.601]	1.148* [0.602]	1.232** [0.598]	0.313 [0.405]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771** [0.224]
업력(연수)		0.449 [0.591]	0.369 [0.589]	0.092 [0.398]	0.118 [0.39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148** [0.172]	2.964** [0.172]	0.694** [0.118]	0.797** [0.116]
처치 전 추세선				0.991** [0.009]	1.000** [0.009]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3.209** [0.609]	1.005* [0.611]	1.133* [0.607]	0.149 [0.411]	
장려금 총액 (천만 원)					-1.812** [0.224]
장려금 종료 1년 후	-2.023 [2.638]	-2.75 [2.591]	-1.913 [2.580]	-4.649** [1.743]	-5.487** [1.721]
장려금 종료 2년 후	-3.187 [5.250]	-5.915 [5.159]	-3.931 [5.164]	-1.707 [3.470]	-2.63 [3.444]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456 [0.591]	0.374 [0.589]	0.1 [0.397]	0.125 [0.396]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3.156** [0.172]	2.969** [0.172]	0.699** [0.118]	0.795** [0.116]
처치 전 추세선				0.991** [0.009]	1.000** [0.009]
상수항	18.531** [0.428]	16.946** [2.135]	-821.013 [1176.557]	-1.744 [1.447]	-2.03 [1.441]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566	1,566	1,566	1,566	1,566
관측치 총수	10,724	10,724	10,724	10,724	10,724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4-5〉 “중장년층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0.591 [0.475]	-0.252 [1.812]	0.416 [0.936]	-1.899 [2.858]	1.971 [1.368]
업력(연수)	-0.015 [0.497]	0.097 [0.196]	-0.038 [0.582]	0.1 [0.516]	0.358 [1.253]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042** [0.132]	3.272** [1.089]	0.763** [0.294]	-0.201 [0.555]	-1.686** [0.710]
처치 전 추세선	0.983** [0.011]	0.978** [0.045]	0.992** [0.029]	1.078* [0.570]	1.030** [0.046]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932** [0.286]	-0.302 [3.687]	-0.661 [1.351]	-2.743 [2.909]	2.094 [1.556]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0.437 [0.482]	-0.252 [1.812]	-0.191 [0.945]	-2.399 [3.116]	2.078 [1.401]
장려금 종료 1년 후	-3.802* [1.950]	.	-14.464** [3.590]	-1.207 [5.194]	1.665 [4.636]
장려금 종료 2년 후	-1.825 [3.773]	.	-4.792 [7.071]	-2.835 [5.831]	.
장려금 종료 3년 후
업력(연수)	-0.007 [0.497]	0.097 [0.196]	-0.002 [0.579]	0.245 [0.606]	0.351 [1.254]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1.047** [0.132]	3.272** [1.089]	0.783** [0.293]	-0.242 [0.585]	-1.694** [0.711]
처치 전 추세선	0.984** [0.011]	0.978** [0.045]	1.009** [0.029]	1.094* [0.591]	1.031** [0.046]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976** [0.286]	-0.302 [3.687]	-1.34 [1.354]	-3.184 [3.135]	2.157 [1.576]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856	86	214	6	120
관측치 총수	5,939	664	1,440	44	822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수혜 사업체들의 수가 다른 사업군에 비해 그리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의 정도가 낮음.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4-5>의 패널 A에 의하면, 중장년층 대상 사업군의 고용효과는 분석 대상 5개 산업에서 공히 통계적으로 유의한 값을 갖지 못함.
- 전반적으로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됨.

제4절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에는 8개 사업(일자리함께하기, 시간선택제신규고용, 고용촉진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직장어린이집, 시간선택제전환, 정규직전환, 일가정양립환경개선)이 포함됨.

- 우리는 이들 8개 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통합 설정하고, 제3장에서 각 세부사업에 대해 적용한 분석과 동일한 분석을 적용함.

□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분석 결과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표 4-6>의 (4)~(5)열의 추정치는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을 고려해 각 사업체별로 처치 전 고용규모의 상이한 추세를 명시적으로 고려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 패널 A의 결과에 의하면,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은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54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이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름.
- 본 사업의 처치 사업체들의 처치 이전 2년 동안의 평균 고용규모가

약 20.4~23.4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장려금 수혜는 처치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2.3~2.6% 정도 증가시킨.

- <표 4-1>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의 지원금을 수혜한 사업체 수(중복 포함)는 총 161,722개임. 이들 사업체에서 평균 0.54명 고용이 증가했으므로, 2010~2018년 사이에 본 사업을 통해 총 87,329.9명의 고용이 증가함.

- <표 4-1>에 의하면,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 투입된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의 장려금 총액은 (고용보험 DB 기준) 약 1조 4,072억 원이고, 식별 가능한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은 약 1조 7,180억 원임.

- 그러므로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은 2010~2018년 사이에 분석 대상 16개 산업에서 10억 원당 (고용보험 DB 기준) 약 62.1명(=87,329.9/1407.2) 정도 고용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한편, 고용노동부의 해당 사업관련 지원 총액 기준으로는 50.8명(=87,329.9/1718)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추산됨.

- <표 4-4>의 (5)열은 처치변수(d)로서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 수혜 금액(단위: 천만 원)을 사용한 모형의 추정결과임. 이 추정치에 의하면,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 수혜는 해당 사업체의 고용규모를 약 0.058명 정도 감소시킨.

- (5)열에 제시된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 [공통 추세의 가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기타 집단 대상 사업의 증장기 고용효과

- <표 4-6>의 패널 B의 결과에 의하면, 본 사업은 처치 사업체의 수혜 당해 고용규모를 약 0.582명 정도 증가시키는 것으로 추정됨.

- 본 사업 지원금 수혜 종료 1년 후에도 본 사업은 고용을 약 0.227명 정도 증가시킨.

〈표 4-6〉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전체 산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2.389** [0.124]	1.994** [0.124]	2.000** [0.124]	0.540** [0.073]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58** [0.015]
업력(연수)		0.752** [0.186]	0.914** [0.186]	0.190* [0.110]	0.199* [0.11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8.972** [0.096]	8.957** [0.096]	2.483** [0.057]	2.504** [0.057]
처치 전 추세선				1.006** [0.001]	1.006** [0.001]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2.809** [0.136]	2.237** [0.135]	2.230** [0.135]	0.582** [0.080]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60** [0.015]
장려금 종료 1년 후	1.399** [0.184]	0.763** [0.184]	0.735** [0.183]	0.227** [0.109]	-0.062 [0.102]
장려금 종료 2년 후	0.673** [0.232]	0.167 [0.231]	0.113 [0.231]	0.062 [0.137]	-0.235* [0.131]
장려금 종료 3년 후	0.199 [0.308]	-0.209 [0.307]	-0.293 [0.306]	-0.126 [0.181]	-0.427** [0.177]
업력(연수)		0.736** [0.186]	0.899** [0.186]	0.186* [0.110]	0.205* [0.110]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8.959** [0.096]	8.945** [0.096]	2.480** [0.057]	2.505** [0.057]
처치 전 추세선				1.006** [0.001]	1.006** [0.001]
상수항	17.795** [0.135]	15.899** [0.504]	960.251** [371.163]	-2.265** [0.298]	-2.315** [0.298]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미통제	미통제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155,384	155,384	155,384	155,384	155,384
관측치 총수	1,045,311	1,045,311	1,045,311	1,045,311	1,045,311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표 4-7〉 “기타 집단 대상 지원금” 사업군의 고용효과 추정결과 : 대분류 산업별

대분류 산업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설명변수	(1)	(2)	(3)	(4)	(5)
패널 A. 단기 효과					
장려금 수혜	0.441** [0.176]	1.074** [0.183]	0.208** [0.103]	1.279** [0.488]	0.222** [0.077]
업력(연수)	0.414 [0.347]	-0.031 [0.325]	0.06 [0.144]	0.164 [0.541]	0.148 [0.117]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181** [0.111]	-7.794** [0.492]	2.226** [0.131]	4.275** [0.720]	0.742** [0.092]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2]	1.003** [0.004]	1.001** [0.002]	1.004** [0.005]	1.004**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95** [0.020]	8.999** [0.242]	-0.371** [0.091]	2.479** [0.411]	-0.361** [0.074]
패널 B. 중장기 효과					
장려금 수혜 당해	0.246 [0.190]	1.298** [0.198]	0.257** [0.114]	1.663** [0.547]	0.234** [0.085]
장려금 종료 1년 후	-0.295 [0.257]	0.576** [0.259]	0.117 [0.152]	1.238* [0.730]	-0.019 [0.118]
장려금 종료 2년 후	-0.37 [0.314]	0.374 [0.313]	0.074 [0.195]	0.98 [0.962]	0.041 [0.152]
장려금 종료 3년 후	-0.131 [0.403]	0.331 [0.405]	0.052 [0.266]	-0.038 [1.335]	-0.14 [0.207]
업력(연수)	0.422 [0.347]	-0.053 [0.325]	0.057 [0.144]	0.116 [0.543]	0.148 [0.117]
다른 사업의 지원금 (천만 원)	4.190** [0.111]	-7.852** [0.492]	2.222** [0.131]	4.246** [0.720]	0.743** [0.092]
처치 전 추세선	1.008** [0.002]	1.003** [0.004]	1.001** [0.002]	1.004** [0.005]	1.004** [0.003]
※ 장려금 총액 (천만 원)	-0.097** [0.020]	9.515** [0.248]	-0.392** [0.093]	2.618** [0.421]	-0.405** [0.076]
사업체, 연도 고정효과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산업별 추세선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통제함
사업체수	44,240	8,108	32,160	8,404	19,422
관측치 총수	322,849	58,993	205,621	41,536	133,685

주: 괄호 안의 숫자는 강건한 표준오차임. *와 **는 추정치가 각각 10%와 5%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표시함.

- 그러나 지원금 수혜 종료 2년 이후의 고용효과 추정치들은 통계적으로 0을 기각하지는 못함.
- 본 사업의 고용효과는 수혜 당해 및 수혜 종료 1년 후까지 존재하고 그 이후에는 유의미한 크기로 존재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

□ 대분류 산업별 표본에 대한 통계 분석 결과

○ 대분류 산업별 고용효과

- <표 4-7>의 패널 A에 의하면,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의 고용효과는 건설업(1.074)와 음식숙박업(1.279)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제조업(0.441), 도소매업(0.208)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222)에서의 고용효과는 위의 산업들의 경우보다는 작지만, 통계적으로 0과 유의하게 다른 추정치를 보여줌.

○ 기타 집단 대상 사업군의 장려금 1천만 원의 고용효과

- 본 사업의 장려금 1천만 원당 고용효과는 건설업(8.999)와 음식숙박업(2.479)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제조업(-0.095), 도소매업(-0.371) 및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0.361)에서는 음의 값을 취함.
- 장려금 1천만 원당 추정치는 본 사업의 지원금이 개별 사업체에 미치는 평균적인 효과이므로, 개별 사업체 수혜 금액의 추정치가 음이라고 하더라도 본 사업 전체의 고용효과는 반드시 음의 값이 도출되지 않을 수 있음.

참고문헌

- 이근희 (2016), 「일반사업 고용영향 자체평가 개선방안 연구: 고용장려금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고용영향평가센터.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백서」, 2010~2019년. 각 연도.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백서」, 2010~2019년. 각 연도.

재정사업 고용효과 산출식 개선 연구 : 고용장려금사업

- | | |
|---------|--|
| ▪ 발행연월일 | 2019년 12월 18일 인쇄
2019년 12월 28일 발행 |
| ▪ 발행인 | 배규식 |
| ▪ 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
☐☐☐☐☐☐☐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 대표 (044) 287-6080 Fax (044) 287-6089 |
| ▪ 조판·인쇄 | 창보문화사 (02) 2272-6997 |
| ▪ 등록일자 | 1988년 9월 13일 |
| ▪ 등록번호 | 제13-155호 |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전 승인 없이 전재 및 역제할 수 없습니다.